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정집

2017. 12.

환 경 부

CONTENTS............. i

0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1

Ⅰ. 목적 ······ 5

Ⅱ. 기본원칙 ······ 5

Ⅲ. 세부 시행지침 ······ 6

Ⅳ.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 지자체 포상 ······ 32

Ⅴ. 행정사항 ······ 33

0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 83

Ⅰ. 목적 ······ 87

Ⅱ. 기본원칙 ······ 87

Ⅲ. 세부 시행지침 ······ 87

Ⅳ. 행정사항 ······ 92

0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95

04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 ······ 123

Ⅰ. 지침 개요 ······ 127

Ⅱ. 재난폐기물 처리체계 ······ 128

Ⅲ. 재난유형별 폐기물 처리 ······ 142

Ⅳ. 행정사항 ······ 151

CONTENTS............ii

0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163

06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177

0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183

08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 205

09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209

10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213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01

2017. 11. 30.

CONTENTS

Ⅰ. 목적 ···· 5

Ⅱ. 기본원칙 ···· 5

Ⅲ. 세부 시행지침 ···· 6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 6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 15
3. 생활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 ···· 17
4.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 19
5. 〈삭제〉 ···· 22
6.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수거 및 비축·재활용 촉진 ···· 22
7. 농어촌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23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24
9. 재활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 25
10.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26
11.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에 관한 사항 ···· 26
12.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지역종량제) 실시에 관한 사항 ···· 27
13.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 28
14.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단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 30

Ⅳ.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 지자체 포상 ···· 32

Ⅴ. 행정사항 ···· 33

[붙임자료] ···· 34

[붙임1] 종량제봉투 재질 규격 ···· 34
[붙임2] 주민부담율 산정표 및 산정방법 ···· 39
[붙임3] 종량제봉투 검체채취 및 판정기준 ···· 45
[붙임4] 공공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47
[붙임5]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지침 ···· 53
[붙임6]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 보고 ···· 55
[붙임7] '00년 연휴기간(설 · 추석) 쓰레기 관리대책 ···· 74
[붙임8] '00년 ○○○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실적(서식) ···· 76
[붙임9] '00년 휴가철 피서지 · 행락철 쓰레기 관리대책 ···· 78
[붙임10] '00년 휴가철 피서지 · 행락철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실적(서식) ···· 80

Ⅰ. 목적

○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친환경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함

Ⅱ. 기본원칙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적용

- 다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 다수인이 모이는 등산로·유원지·해수욕장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이하 “공공지역”이라 한다)도 이용객수가 많은 기간에 한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적용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중 소규모 농어촌지역은 폐기물 적정 수거를 위하여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운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적용

※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을 적용

Ⅲ. 세부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봉투 종류·재질·규격 등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제작 가능

- 일반용 봉투 용량: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 재사용 종량제봉투: 3ℓ, 5ℓ, 10ℓ, 20ℓ, 30ℓ
- 공공용 봉투 용량: 30ℓ, 50ℓ, 100ℓ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용량: 3ℓ, 5ℓ

○ 일반용 봉투는 발생원을 고려,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으로 구분하여 제작·공급 가능

2) 종량제봉투의 형태·재질·규격

○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주민의 사용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 재질을 선정하되 재질별 규격은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에서 결정

- 재질 선정시 재질별 인장강도, 노치 후 인열강도, 신장율 등을 상호 비교하여 용도에 적합한 재질을 선정([붙임1] 종량제봉투 재질 규격 참조)

○ 종량제봉투의 품질·실험방법 등은 '단체표준' 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제작사용 가능

○ 탄산칼슘 함유봉투는 소각시설 설치지역에 한하여 선정·사용

○ 생분해성 또는 생붕괴성 봉투는 재질특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사용 확대

○ 종량제봉투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자치단체별 품질관리 및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 등 대책 강구

3) 생분해성 봉투 사용에 관한 사항

○ 생분해성 봉투는 난분해성 합성수지 분리수거 실시 여부 및 경제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도입 추진

-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에 대한 분리수거(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등을 실시하는 지역에 우선 도입
- 퇴비화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비위생 매립지용 종량제봉투 등으로 우선 적용
- 생분해성 봉투를 도입시 관내 유통업체로 하여금 식품매장의 속 봉투(롤백)를 생분해성 재질로 대체토록 유도하는 등 비닐봉투 투입량 저감방안을 병행 추진

○ 생분해성 봉투 사용에 따른 봉투가격 인상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지 운영기관은 생분해성 봉투 사용 자치단체의 반입비용을 인하하는 반면 난분해성 봉투를 사용하는 자치단체의 반입비용을 인상하는 차등화 방안을 강구 추진

- 반입가격 차등단가, 적용기간 등은 생분해성 봉투 사용비율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 운영비용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 생분해성 봉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 사용

4) 종량제봉투의 색상

○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반드시 구분하여 혼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용은 흰색(반투명) 등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공공용은 엷은 청색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것

나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부과원칙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하여 배출자에게 부과

○ 배출자가 한정되어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는 당해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전액을 수수료로 부과

- 대형 폐기물 중 폐가전제품 등 사업자단체가 처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처리비용을 제외한 수집·운반 비용만을 산정하여 부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 폐기물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지자체 조례로 종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적용 제외)

※ 수수료 산정시 수거원가는 노무비(기본급, 가산금, 상여금,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등), 경비(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지급임차료 등) 및 일반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처리원가는 반입수수료, 위탁처리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주민부담율 산정기준 제시

○ 종량제봉투가격에 대한 주민부담율 산정기준 제시[붙임2]

※ 주민부담율(%):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100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하고, 봉투 판매소 수수료, 봉투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은 제외

○ 봉투제작비는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특수규격봉투의 경우 상향된 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판매수수료: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 + 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 × 판매 수수료 요율 ÷ (1 - 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수수료로 산정하되 10원 단위로 절상조정

3)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

○ 자치단체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의 분석 및 평가

- 자치단체별로 매년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과 가로청소비용 등 청소행정에 소요된 제반비용과 청소관련 총 수입액을 산출하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산정

- 재정자립도: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종량제봉투 판매 이외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재활용품 판매수입+대형폐기물수수료 수입+기타 수입(과태료 등)] ÷ 연간 폐기물 총 처리비용

※ 연간 폐기물 총 처리비용 =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가로청소 비용 등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청소예산재정자립도의 분석결과를 제출받아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청소예산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한 개선을 권고

- 청소대행 위탁처리비용의 시·군·구간 격차해소, 처리시설의 광역화, 수집·운반체계의 개선 등 개선방안을 권고

○ 종량제봉투에 담아버리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함

○ 환경부에서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율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 지자체 포상 및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 지원 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또는 주민부담율을 고려할 수 있음

다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 제작

○ 종량제봉투를 제작 또는 구매할 경우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제작·구매 사용하여야 함

2)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시스템 도입

○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

○ 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

○ 봉투제작 시 담당자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사용
  - 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을 봉투 겉면에 표시

3)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금지

○ 민간 제조업체와 계약 체결시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금지의무, 하도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불법 제작시 처벌규정(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계약서에 적시

○ 제작업체는 종량제봉투 제작기간 중 매일 제작일지를 작성
  - 제작일지에는 제작 시·종료시간, 일일 생산량, 봉투 불량 발생량, 점검자 성명 등을 기재하되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제작 사용

○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여 관리

4) 종량제봉투 인쇄문구 최소화

○ 종량제봉투 제작 시 인쇄문구는 봉투와 직접 관련 없는 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치단체명, 봉투용량·재질·용도·사용법, 홍보성 문구(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 이사 등으로 인한 반품 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

5) 종량제봉투의 검수

○ 구입시에는 검수 공무원이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단체표준규격(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검수

-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 생분해성 봉투를 구입시 봉투 제조사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원료를 구매하여 제조하였는지 여부 및 봉투에 환경표지(환경마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후 검수

○ 검체채취 방법 및 수량은 [붙임 3]의 "종량제봉투 검체 채취 및 판정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검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체수량을 늘려서 검수

6) 종량제봉투 품질관리

○ 종량제봉투 납품 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한 부정기 검체 수거 및 분석을 실시하여 품질관리

- 봉투 재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봉투재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중에 판매되는 종량제봉투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
- 단체표준규격 부적합한 종량제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봉투구입 계약시 해당사항을 구입조건으로 명시)

라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 공급

○ 봉투공급은 시·군·구(읍·면·동)직영판매/금융기관 위탁판매/청소대행업체 판매/민간위탁판매 방식 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가 결정하되 직영판매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취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

○ 불연성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특수규격봉투(마대)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경우 가능한 일반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같이 판매하도록 조치

○ 종량제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마대) 판매소는 지역 주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함

2) 판매소 지정·운영·감독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부착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시 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 정식 양수의무,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의무, 규격 가격표 부착의무, 불법 종량제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의무,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의무 등 영업상 의무에 관하여 고지

○ 불법유통 적발로 지정 취소된 판매소의 경우 3년간 판매소 재지정 금지

○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도매점을 통해 소매점 봉투 판매실적을 반기별로 제출받아 판매량이 30%이상 급감한 소매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 봉투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도록 조치(봉투판매소 지정 취소 조건에 포함)

○ 봉투 판매소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추진

- 편의점 등 봉투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고,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장바구니를 판매 또는 무상 대여하는 방안을 확대 실시(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봉투판매소 지정조건에 포함하거나 권고)

마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유통매장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를 추진

-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편의점 등과 대형유통매장(백화점·대형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비치하고 판매하도록 조치
- 동일한 시·도 내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해당 시·군·구의 일반 종량제봉투 가격 이상의 동일한 가격으로 관내 모든 대형유통매장(백화점·대형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서 판매되도록 추진

○ 시·도별로 단일화된 재사용 종량제봉투가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청소대행체계 개선(종전 청소대행 독립채산제 폐지), 봉투가격 단일화 등의 조치를 추진

- 단일화된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보급이 어려울 경우에도 색상·규격 및 가격은 동일하게 하되, 해당 시·군·구 명칭을 기재하여 제작·보급하는 방안 추진

○ 시·군·구 별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보급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위치한 시·군·구의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인접한 시·군·구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함께 판매하도록 허용

- 대형유통매장이나 기업형 수퍼마켓 등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공급을 요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 대형 유통매장(백화점·대형마트 등),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

- 계산대 옆에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비치하여 고객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상품진열대 비치 금지)
- 매장 입구, 계산대 정면 등에 안내문과 봉투가격을 게시하고, 안내 방송 실시

○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 유통업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봉투 뒷면에 유통 업체명, 로고 등의 인쇄 허용

- 인쇄시 인쇄비 및 광고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상호협의 추진

바 종량제봉투의 환불·교환 편리성 제고

○ 봉투가격이 동일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관내 모든 봉투판매소에서 봉투 교환이 가능토록 개선

○ 봉투가격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상호 협의하여 봉투 판매소에서 교환해 주고 자치단체간 년 1, 2회 교환량과 판매가격 차액을 정산하는 체계를 구축

※ 시·군·구 간 봉투가격 차액을 노린 다량의 환불·교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환매수 제한

○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자체 종량제봉투로의 교환 또는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필요량에 따라 배부하고 인증마크 부착 시 수거·처리 조치

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추진

○ 지역업체 대상으로 광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공익광고 유치 등으로 종량제봉투 광고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아 저소득층 등의 수수료 경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저소득 자에 대하여 가구당 매월 120ℓ를 기준으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봉투값을 경감하여 매월 생활보호비(물품)와 함께 제공하되, 선심성 무상제공사례 억제

-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재래식 시장, 시골장날 등에서 종량제 시행으로 봉투값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영세상인의 경우도 경감조치 가능

자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 이하로 지급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자동집하시설 설치 경우 포함)

○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스티커 부착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예시) 100ℓ: 25kg 이하, 75ℓ: 19kg 이하, 50ℓ: 13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 이하)

○ 자동집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

-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 방안 및 배출자부담원칙 준수(종량제봉투 가격 차등화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
- 분양사는 분양광고 및 계약 시 계약자에게 자동집하시설 설치비용의 자기부담 등을 명시하고, 지자체는 자동집하시설의 유지관리 방안(시설운영, 비용 부담 방법 등) 등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함
- 반드시 가정이나 공동 투입구 등의 투입단계에서 종량제봉투 사용 등 동 지침의 종량제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천재지변·사고 등에 대비하여 별도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갖추어야 함
-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여 일반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집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폐기물을 분리 집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2009년 7월부터 2016년 10월 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회수율 기준을 만족하여 단일관로로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회수율을 조사하여야 함. 폐기물의 분리 집하·처리가 어렵거나 회수율 기준에 미달한 자동집하시설 운영주체는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 신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위한 별도의 수집·운반 관로를 설치하여야 함. 단,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이 아닌 별도의 방법(문전수거 등)으로 집하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집·운반 관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자동집하시설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운영하여야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관리할 수 있음
- 지자체에서 운영·관리를 전제로 자동집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으로 검토

나 종량제 적용배제 폐기물의 배출방법

○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되 지정된 정기 수거일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

-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조례로 별도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거나, 사업장폐기물로 관리

  단,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배출

※ 소규모사업장은 지자체에서 지역여건 및 영업소득,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정(소득세법 제70조제4항 5호 참고)

○ 재활용가능자원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배출요령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별도의 배출방법을 적용

다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최대한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수거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제작·판매하는 별도의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배출

○ 전용 포대, 마대가 없는 자치단체는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준하여 일반마대에 담은 후 마대전용 배출 스티커를 구입·부착 후 배출(일반 마대를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규정에 포함)

라 취급 위험 폐기물의 배출방법

○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

마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지정·운영

○ 생활폐기물 수거여건 등에 따라 지역별로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지정하되, 가능한 한 일몰 후~일출 전(20:00~익일 06:00)에 배출하도록 규정

3 생활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

가 수거장소 지정 및 청결유지

○ 아파트, 상가, 단독 주택지역내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여 수거장소로 지정하고 수거시간, 배출요령 등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및 홍보실시

- 수거가 어려운 고지대 단독주택, 농어촌 지역 등은 학교운동장, 동사무소, 마을 공터 등 일정지역을 수거장소로 지정·수거하는 거점수거방식을 적극 활용
- 수거장소 지정이 어려운 단독주택지역은 문전수거 또는 대면수거방식으로 수거하여 불법배출을 억제하고 청소서비스 제고

○ 생활폐기물 수거장소는 구획을 정하거나, 개방된 형태의 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청결이 유지되도록 관리

○ 폐식용유는 별도 장소에 전용의 용기를 비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등과 분리하여 별도 배출하도록 유도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장소 등에 폐식용유 배출 전용용기를 비치하고, 단독주택 단지에는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비치'

※ 전용 수거용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비치하거나, 지자체 대행업체(민간 재활용사업자) 등에서 비치

나 요일별·품목별 수거체계 운영

○ 지역별 수거장비 및 인력 여건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요일을 지정·운영하고, 수거체계를 별도로 운영하여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이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관리

○ 재활용품의 수거효율 제고를 주거형태, 분리수거용기 설치여부, 수거장비 및 인력 등을 감안한 요일별로 수거품목을 지정운영

○ 동일 생활권인 자치단체간 재활용품의 수거요일 및 수거품목을 동일하게 지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

○ 인접 자치단체간 재활용품의 전체 또는 품목별 공동수거체계 및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공동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수거장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

다 재활용품 적정수거 체계 유지

○ 재활용품은 종류별(4~5종)로 분류하여 배출·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참여도, 수거 및 선별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분리수거 유형을 설정

-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이 수거운반과정에서 혼합 수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되, 수거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품목별로 수거가 어려운 지역은 2~3종으로 단순화하여 수거
- 장기적으로 선별처리과정을 기계화하여 단순화된 분리배출체계로 전환하여 주민의 재활용품 배출편의를 도모

※ 재활용품 수거·선별·소각시설 등에는 부탄가스 캔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울 수 있는 도구 비치 등 소각 시 폭발사고 사전 예방

○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에 대행 또는 위탁하는 경우 경제성이 낮은 일부 품목의 수거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라 청소차량 색상 및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청소차량은 도시미관 및 주민정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색상 및 디자인을 변경

- 색상 및 디자인 변경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등 신규 구입차량 또는 교체차량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변경

※ 청소차량의 색상이 획일적으로 녹색 단일 색상으로 되어 있어, 주민에게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줌에 따라 산뜻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변경 추진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매립·소각) 운영관리기관에서 반입차량의 색상을 녹색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 반입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색상 및 디자인 변경을 추진

마 생활폐기물 안전 수거에 관한 사항

○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작업자는 수집·운반 여건 및 작업 역할에 따른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수작업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작업화 및 절단방지장갑을 착용

4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가 대형폐기물의 종류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폐기물

- 가전제품류: 냉장고, 세탁기, 탈수기, 청소기, 가습기, 다리미, 팩스기기,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젼, 전축, 컴퓨터, 스피커, 온풍기, 난로, 가스오븐렌지, 전자렌지, 선풍기 등
- 가구류: 장롱, 응접세트, 식탁, 밥상, 싱크대, 책상, 책꽂이, 침대 목재 및 매트리스, 의자, 장식장, 화장대, 문갑, 서랍장, 옷걸이, 신발장 등
- 생활용품: 쌀통, 벽시계, 인형류, 장남감류, 가방, 액자, 진열대, 캐비넷, 피아노, 기타 등
- 기타: 문짝, 수족관, 거울, 자전거, 유모차, 깨진 유리, 항아리, 세면대, 변기통, 장판, 카펫, 목재, 프라스틱류 등

나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 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은 재활용센터에 연락하여 무상수거 되도록 안내 및 홍보

○ 자치단체에서는 대형폐기물의 크기가 크고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배출 시 이동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및 배출체계 간소화 추진

○ 대형폐기물의 배출과 수거는 주민편의 및 수거효율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추진

① 자치단체에서 배출스티커 구입·배출

-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해 배출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신고하고 배출스티커를 구입
- 수거전담반 직원이 배출원을 방문하여 배출스티커가 부착된 폐기물 수거

②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 구입·배출

- 자치단체에서 배출스티커를 제작[폐기물부착용, 배출자 보관용(수수료 납부필증) 2매]하여 봉투판매소에 판매
- 배출자는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를 구입한 후 배출자명, 배출일시를 배출스티커에 기재후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③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지정 수거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전담하는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배출자가 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해 신고 후 배출
- 대행업체에서 배출원을 방문하여 처리수수료를 징수한 후 현장에서 수거(배출자에게 영수증 발급)
- 수거업체에서 처리수수료를 과다 징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실시

④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 신청후 배출하는 방안 강구

- 처리수수료 납부방법은 인터넷 신고와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고, 영수증은 출력후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 위조 영수증의 불법 제작·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위조방지 프로그램 도입 등 대책 마련 필요

⑤ 재활용센터를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자로 지정 수거

- 재사용 가능 폐기물 확보, 주민편의 및 수거 효율 제고, 배출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해 재활용센터 활용 수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센터는 대형폐기물 중 재활용하는 것만 수집·운반이 가능하므로 ①재활용센터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거나, ②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또는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자와 연계협약을 통해 수거 추진

○ 배출스티커 구입 장소 확대 및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분류하여 유사한 품목간 수수료 차이를 줄이는 방안 강구

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조례로 별도 규정하되,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개별 품목별로 처리수수료를 정하여 부과

○ 폐가전제품 등 생산자단체가 무상 처리하거나, 기타 재활용자가 무상 처리하는 경우 처리비용을 제외한 수집·운반비용만을 처리수수료로 부과

○ 재활용센터의 대형폐기물 수거 참여에 따른 수거·운반, 처리예산 절감비용 등을 감안하여 처리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

- 폐가전류는 권역별 리싸이클링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량 무상수거로 전환
- 폐가구류는 재사용 확대에 따른 처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품목별 배출 수수료 인하를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진

○ 장판, 카펫, 목재류, 플라스틱류 등 개별 품목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배출량에 차이가 많은 폐기물은 배출량(중량)에 따라 차등하여 처리수수료를 부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산정 부과

라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환불에 관한 사항

○ 대형폐기물의 배출자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기 납부한 처리수수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도록 조치

-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유형에 따라 환불 규정을 마련하여 시·군·구 조례 개정 조치

마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

○ 대형폐기물을 수거·운반하여 자치단체 집하장 또는 보관 장소에 일시 보관

- 회수된 대형폐기물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우선적으로 재활용센터에 인계하여 재사용하도록 하거나, 민간 재활용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조치

○ 대형폐기물의 직매립을 지양하고 파쇄시설을 설치하여 파쇄 후 소각 또는 처리

○ 파쇄과정에서 분리된 고철 등 재활용가능품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5 〈삭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으로 이관

6 1회용 비닐봉투의 분리수거 및 비축·재활용 촉진

가 1회용품 비닐봉투의 분리수거

○ 종량제봉투 내에 들어가는 1회용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장은 수거 및 재활용여건을 고려하여 1회용 비닐봉투를 별도 수거

○ 1회용 비닐봉투의 별도 수거는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에 의한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 장의 판단 하에 무상수거 가능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의 용량은 가정내 장기간 보관되지 않도록 소형(3ℓ, 5ℓ)으로 제작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동일한 PE재질인 필름류(세탁물 카버, 휴지 겉포장 등)도 확대수거 가능

나 수거된 1회용 비닐봉투의 비축·재활용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로 수거된 1회용 비닐봉투류는 재활용 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

○ 재활용업체가 없을 경우 상업성 있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압축·용융하여 폐기물 매립 완료지역 등에 적재하거나 비축

7 농어촌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지역 중 폐기물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인구 밀도가 낮아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공동 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배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

- 군단위 지역 중 읍·면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 후 확대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 폐기물 공동수거시 생활폐기물 이외의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재활용품 등은 별도 분리수거체계를 구축

- 한국환경공단의 농촌폐비닐 수거체계와 연계하여 수거하는 방안 강구

○ 농어촌지역에서 발생된 농기계 폐윤활유는 마을단위, 개인별 폐유 수집통에 수집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수거하여 농기계 수리센타,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

○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생활폐기물 전담 수거반을 구축·운영하는 방안 강구

- 농어촌 마을 순회를 통한 정기 수거활동으로 대형폐기물·재활용품 등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성 제고,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사전예방·단속 실시
- 차량 진입이 용이한 들판 곳곳에 농약 빈병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 강구

○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생활주변 청소의 날'과 연계·운영하여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1기관 1마을' 정화활동을 전개하는 방안 강구

- 마을 주변 야산, 하천제방 및 농로 등에 방치된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등 대청소 실시

○ 부득이 지역특성상 '마을단위 종량제'실시가 어려운 지역은 무상수거하는 방안 강구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사업장폐기물의 종량제 확대 적용

○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 1일 300㎏이상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종량제를 가능한 한 확대 적용

○ 공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일괄적으로 종량제를 확대 적용

○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자치단체에서 처리 가능한 재활용품은 자치단체장의 판단 하에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유·무상으로 반입 처리가능

나 사업장폐기물의 불법배출 단속 강화

○ 사업장 지정폐기물 등이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 또는 불법 배출되지 않도록 지도·단속 강화

○ 종량제 적용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조례로 정한 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

○ 재활용 가능자원이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분리배출 강화

9 재활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재활용센터 운영

○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통한 서민친화적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

○ 재활용센터를 지역 복지사업과 연계·운영하는 등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고, 중고물품 수거·운반·선별·수리·리폼·판매 등 전 과정에서 다수의 일자리 창출

○ 재활용센터를 법인화하여 수익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소외계층 등에 대한 중고물품 무상지원에 주기적 참여 유도

○ 중고물품 및 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교환이용이 용이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환창구를 개설운영하고 관내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정보를 공개

- 재활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중고물품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망 구축방안 검토(광역 자치단체 주도)

나 재활용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및 광역화

○ 재활용시설·장비의 이용효율을 증진하고, 재활용품의 비축·판매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공동 수거 및 처리시설 활용 등 재활용기반시설의 광역화를 적극 추진

다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활성화 지원

○ 재활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의 판매매장·수리·리폼공간·보관창고 등의 확충에 필요한 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사용료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재정적 지원 추진(서울시의 경우 기 시행 중)

○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자의 임대보증금, 실내 장식비, 매장 매입비, 중고물품 구입비 등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 자치단체가 직영 또는 지정(위탁)한 재활용센터를 "○○ 시·구 재활용센터"로 지정(계약)하여 타 중고매장과 차별화 관리

- 지정(계약)한 재활용센터에 표준화된 상호명칭을 부여(예시 참조)하여 공익적 성격의 사업수행 지원

00시·구 지정 재활용센터	00시·구 지정 제00호 행정구역명 재활용센터

10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원·유원지·관광지·등산로·경기장·해수욕장 등 공공지역은 [붙임4]의 공공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가능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

○ 입장료를 받지 않거나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지 않는 공공지역은 이용자가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토록 조치

○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공공지역은 관리주체가 입장료를 징수하고 종량제봉투를 무료 지급하거나 자체 수거·처리하는 체계 구축

○ 공공지역에는[붙임5]의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에 따라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

11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청소대행업자)에게 일정지역에 대한 청소업무 대행가능

-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지역은 직영처리시 보다 청소효율이 증진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실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

※ 주민에게는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대행업체 위탁비용은 인구수, 가구수 등으로 산정 지급하는 사례 방지

○ 주민과 처리업자간의 직접계약에 의한 폐기물처리는 불가

12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지역종량제) 실시에 관한 사항

○ 폐기물 감량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진하고,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제고

- 폐기물 감량실적을 위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폐기물이 증가된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인센티브제의 효과를 제고
- 인센티브제가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등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추진

○ 인센티브제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계량이 가능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실시

○ 인센티브제 실시지역은 지역단위로 구분(시·군·구, 동, 아파트단지, 상가, 대규모 건물 등)하여 추진

- 폐기물 감량을 위한 지역간 경쟁으로 불법소각 행위가 예상되는 자연부락 등 농촌지역은 제외

○ 인센티브제 추진기관별(광역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운영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로 자치단체 및 주민의 실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 생활폐기물 반입비용 인하, 청소예산 지원 확대, 청소부서 포상 및 인사상 혜택 부여, 주민·부녀회 등에 대한 포상 등
- 포상은 조례, 자치단체 내부규정 또는 방침 등으로 용이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용하되, 연간 생활폐기물 감량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의 10% 이상 30%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

13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가 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 확대 실시

○ 마을청소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자율적으로 청소지역·일시를 정하도록 하고, 청소장비 지원과 사후관리를 실시

○ 마을청소 참여자는 조기 축구회, 부녀회 등 주민단체, 지역 자원봉사단체, 사업장, 학생 등 단체 위주로 모집하여 청소활동의 지속성을 확보

- 주민단체 및 사업장은 10인~20인 이상, 학생은 학급당으로 모집하여 마을청소용 종량제봉투가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사례 방지

○ 참여단체에 청소도구(빗자루·집게·마대 등)를 지원하고, 전월의 청소실적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마을청소용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

- 청소도구 및 종량제봉투를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을 비치

○ 마을청소 참여자에 대한 지원

- 우수 추진단체, 참여자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 가정용 종량제봉투 무상 제공, 재활용품 고가 매입, 청소실적에 따른 장려금 지급 및 학생 참여자에 대한 봉사활동실적 확인서 발급 등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인센티브 부여

나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시행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각종 집회, 시위, 행사 등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수리 시에 동 집회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행사 등의 추진주체가 수거하도록 조치하여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

- 집회 등 행사장소가 쓰레기투기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례로서 필요한 조치를 명령

○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 행위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
- 토지·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 청결유지 조치명령의 내용 및 절차
- 토지·건물의 청소, 폐기물 수거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토록 조치
-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실시

다 거리 쓰레기통 설치·운영

○ 도시 청결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동인구수,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휴지·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진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거리 쓰레기통 확대 설치
- 거리 쓰레기통은 건널목, 지하철 입구, 버스·택시 정류장, 공원 출입구 등에 설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목표율을 정하여 설치
- 목표율은 설치 대상 장소의 30%이상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쓰레기통은 설치장소와 지역적·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설치

○ 쓰레기통 투입구는 이동 중에 발생되는 소량의 쓰레기만 투입될 수 있도록 투입구 크기를 제한

○ 거리 쓰레기통 설치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병행 설치(그물망, 수거함 등)하여 캔,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

○ 거리 쓰레기통 주변이 폐기물 투기장소로 활용되지 않도록 거리 쓰레기통 내·외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청결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 거리 쓰레기통 내부에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비치하여 수거·운반의 용이성 제고
- 지역별 실정에 따라 거리 쓰레기통 전담 관리를 민간위탁 및 자체관리 방안 강구

○ 자치단체는 「폐기물관리법」제16조에 따라 길거리 쓰레기(음료캔, 일회용컵 등 재활용품 포함)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의 편의점, 커피 판매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보행자가 길거리 쓰레기를 판매점 등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되는 쓰레기의 양을 고려하여 판매점 등에 공공용 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라 일제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

○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봄맞이 대청소 실시 등 자치단체별 대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청소 참여를 적극 홍보

○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일제 청소의 날로 지정하는 등 월1회 이상을 생활주변 청소의 날로 지정·운영

14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단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한 홍보·단속 강화

○ 지역 환경·시민단체 회원 등을 불법배출 명예단속원으로 임명하여 적극 활용하고, 공익근무요원 등을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단속업무에 적극 투입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반을 설치·운영

- 공무원 이외에 민간인을 단속전담요원으로 지정하거나, 감시전문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일정기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 강구

○ 시·군·구청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 할 수 있는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습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역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화단 등을 설치하는 방안 강구

※ 쓰레기 불법소각·투기신고 포상금제 운영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지자체 자율실시)에 따라 삭제

나 연휴기간 및 피서·행락철 등 특정시기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 설·추석연휴, 피서 및 행락철 등 유동인구가 급증하여 생활폐기물 투기가 예상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급증이 우려되는 기간 및 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수립추진

- 연휴기간, 피서 · 행락철 등 특정시기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지침(붙임 7, 붙임 9)에 따라 지역별 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

○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다중집합장소 및 피서지, 행락지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단속 실시

○ 연휴기간 중 생활폐기물 적체방지, 피서지·행락지 생활폐기물 적기수거를 위한 특별청소 체계 운영

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 반상회보에 고정란을 확보하여 수범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 홍보 실시

○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시

○ 지역단위 각종 행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순회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주변에 전파되도록 유도

○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주변 청소하기,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및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교육실시

Ⅳ.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 지자체 포상

1 목 적

○ 환경부장관은 매년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선진화를 도모

2 평가개요

○ 분야: 전년도 생활폐기물 관리 현황 및 우수사례 2개 분야

○ 일정: 평가계획 시달(3월), 평가서 제출(시·군·구→시·도, 4월말), 1차 평가결과 제출(시·도→환경부, 5월말), 최종평가(환경부, 6~7월), 시상(9.6일 자원순환의 날)

○ 평가항목

- 발생량 감량성과(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년 대비 폐기물 감량률 등)
- 생활폐기물 재활용 성과(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 비율 등)
-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개선 정도
- 홍보실적(교육·캠페인, 언론 보도 등)
- 장비선진화(자동 선별시설, 자동 상차차량 보유 비율) 등

Ⅴ.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지침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정

○ 종량제봉투에 표기하는 인쇄문구는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가급적 최소화

○ 각 시장·군수·구청장은 [붙임6]의 양식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익년 3월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3월말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각 광역시·도지사는 매년 연휴기간(설·추석) 및 피서·행락철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실적을 [붙임 8, 붙임 10]의 양식에 따라 대책 추진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환경부로 제출

- 각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 추진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광역시·도로 제출

○ 종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6.11.11., 폐자원관리과-6005호)는 폐지함

붙임 1

종량제봉투 재질 규격

1. HDPE 재질 종량제봉투

종 류 (용량: ℓ)	높 이 (cm)	나 비 (cm)	두 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인열강도 (N/㎜)	
						보통	접은곳
3	39.5	22	0.025	42.1	340	110.0	95.0
5	46.5	26	0.025	42.1	340	110.0	95.0
10	56.5	33	0.025	42.1	340	110.0	95.0
20	69.5	42	0.030	41.2	360	110.0	95.0
30	78.5	48	0.035	41.2	360	100.0	90.0
50	91.5	56	0.040	41.2	380	100.0	90.0
75	103.5	65	0.045	40.2	400	100.0	90.0
100	113.5	71	0.050	40.2	400	100.0	90.0

2. LLDPE 재질 종량제봉투

종 류 (용량: ℓ)	높 이 (cm)	나 비 (cm)	두 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인열강도 (N/㎜)	
						보통	접은곳
3	39.5	22	0.025	26.5	380	65.0	55.0
5	46.5	26	0.030	26.5	420	70.0	60.0
10	56.5	33	0.030	26.5	420	70.0	60.0
20	69.5	42	0.035	26.5	440	70.0	60.0
30	78.5	48	0.035	26.5	440	70.0	60.0
50	91.5	56	0.045	26.5	460	75.0	70.0
75	103.5	65	0.050	26.5	460	75.0	70.0
100	113.5	71	0.055	26.5	480	75.0	70.0

3. 탄산칼슘 함유 종량제봉투

종 류 (용량: ℓ)	높 이 (cm)	나 비 (cm)	두 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인열강도 (N/㎜)	
						보통	접은곳
3	39.5	22	0.030	27.4	350	70.0	70.0
5	46.5	26	0.030	27.4	350	70.0	70.0
10	56.5	33	0.030	27.4	350	70.0	70.0
20	69.5	42	0.035	29.4	400	75.0	75.0
30	78.5	48	0.040	29.4	400	75.0	75.0
50	91.5	56	0.045	29.4	400	75.0	75.0
75	103.5	65	0.050	29.4	400	75.0	75.0
100	113.5	71	0.055	29.4	400	75.0	75.0

4. 생붕괴성 재질(AP+전분/LLDPE) 종량제봉투

종 류 (용량: ℓ)	높이 (cm)	나비 (cm)	두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인열강도 (N/㎜)	
						보통	접은곳
3	39.5	22	0.025	23.5	400	65.0	55.0
5	46.5	26	0.030	23.5	400	65.0	55.0
10	56.5	33	0.030	23.5	400	65.0	55.0
20	69.5	42	0.035	22.5	400	65.0	55.0
30	78.5	48	0.035	22.5	400	65.0	55.0
50	91.5	56	0.045	22.5	420	60.0	50.0
75	103.5	65	0.050	20.6	420	60.0	50.0
100	113.5	71	0.055	20.6	420	60.0	50.0

5. 생붕괴성 재질(AP+전분/HDPE) 종량제봉투

종 류 (용량: ℓ)	높이 (cm)	나비 (cm)	두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인열강도 (N/㎜)	
						보통	접은곳
3	39.5	22	0.025	33.3	250	75.0	65.0
5	46.5	26	0.025	33.3	250	75.0	65.0
10	56.5	33	0.025	33.3	250	75.0	65.0
20	9.5	42	0.030	33.3	280	75.0	65.0
30	78.5	48	0.035	31.4	300	70.0	60.0
50	91.5	56	0.040	31.4	300	70.0	60.0
75	103.5	65	0.045	29.4	320	70.0	60.0
100	113.5	71	0.050	29.4	320	70.0	60.0

6.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종 류 (용량ℓ)	높이 (㎝)	나비 (㎝)	두께 (㎜)	인장강도 (N/㎟)	신장률 (%)	노치후인열강도 (N/㎜)	
						보 통	접은곳
1	29.5	15	0.025	26.5	300	70.0	50.0
2	35.5	19	0.025	26.5	300	70.0	50.0
3	39.5	22	0.025	26.5	300	70.0	50.0
5	46.5	26	0.030	26.5	300	70.0	50.0
10	56.5	33	0.030	26.5	300	70.0	50.0
20	69.5	42	0.035	26.5	300	70.0	50.0
30	78.5	48	0.035	26.5	300	70.0	50.0
50	91.5	56	0.045	26.5	300	70.0	50.0
75	103.5	65	0.050	26.5	300	70.0	50.0
100	113.5	71	0.055	26.5	300	70.0	50.0

7. 재사용 종량제봉투

종 류 (용량: ℓ)	높 이 (cm)	나 비 (cm)	두 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인열강도 (N/cm)	
						보통	접은곳
3	35.0	32.0	0.025	4,200	300	800	800
5	41.5	32.0	0.025	4,200	300	800	800
10	53.5	36.0	0.025	4,200	300	800	800
20	65.3	45.0	0.030	4,100	320	900	900
30	70.5	58.0	0.035	4,100	360	1,000	900

8. 끈달린 종량제봉투(LLDPE)

종 류 (용량: ℓ)	높 이 (cm)	나 비 (cm)	두 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인열강도 (N/㎜)	
						보통	접은곳
3	33	22	0.025	26.5	380	65.0	55.0
5	39	26	0.030	26.5	420	70.0	60.0
10	50	33	0.030	26.5	420	70.0	60.0
20	63	42	0.035	26.5	440	70.0	60.0
30	73	48	0.035	26.5	440	70.0	60.0
50	85	56	0.045	26.5	460	75.0	70.0
75	99	65	0.050	26.5	460	75.0	70.0
100	108	71	0.055	26.5	480	75.0	70.0

9. 끈달린 종량제봉투(HDPE)

종 류 (용량: ℓ)	높 이 (cm)	나 비 (cm)	두 께 (mm)	인장강도 (N/㎟)	신장율 (%)	노치후인열강도 (N/㎜)	
						보통	접은곳
3	33	22	0.025	42.1	340	110.0	95.0
5	39	26	0.025	42.1	340	110.0	95.0
10	50	33	0.025	42.1	340	110.0	95.0
20	63	42	0.030	41.2	360	110.0	95.0
30	73	48	0.035	41.2	360	100.0	90.0
50	85	56	0.040	41.2	380	100.0	90.0
75	99	65	0.045	40.2	400	100.0	90.0
100	108	71	0.050	40.2	400	100.0	90.0

10. 참고사항

○ 상기 규격기준은 단체표준규격을 요약한 것임

붙임 2

주민부담율 산정표 및 산정방법

❑ 주민부담율 산정표

(단위 : 천원)

구 분				연간 금액	비 고
수집·운반 비용	직영시	인건비		①	
		경비	차량 관련 경비	②	
			적환장 운영비	③	
			경비 소계	④ (②+③)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5%		⑤	
		수집·운반비 소계		⑥ (④+⑤)	
	위탁/대행시	수집·운반비		⑦	
	수집·운반 비용 합계			⑧ (⑥+⑦)	
처리비용	위탁처리시	폐기물 처리비 (반입 수수료)		⑨	
	자체 처리시설 처리시	폐기물 처리비 (처리시설 운영비)		⑩	
	처리비용 합계			⑪ (⑨+⑩)	
봉투 제작비용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⑫	제작량 (천매)
A. 수집·운반·처리비용				⑬ (⑧+⑪+⑫)	
B.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⑭	판매량 (천매)
C. 주민부담율 = (B ÷ A) × 100				⑮	

〈참고 : 주민부담율 산정방법〉

참고

주민부담율 산정방법

1. 수집·운반·처리비용 산정방법

(1) 수집·운반·처리비용 산정 기본원칙

○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가로청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관련 소요경비 등은 제외

○ 수집·운반 처리비용 산정시, 자치단체에서 직영 운영과 위탁/대행을 병행할 경우에는 산정표 상의 직영시 비용란과 위탁/대행시 비용란에 모두 기재

(2) 수집·운반 비용 산정방법

가. 직영 운영시

1) 인건비

○ 인건비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인원(환경미화원 및 차량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를 기재

-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전담인력인 경우 : 연간 총 인건비
-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전담인력이 아닐 경우(가로청소 등 기타 업무를 겸하는 경우) : 연간 총 인건비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업무 ÷ 전체 수행업무 × 100

[표 1. 인건비 산정표]

(단위: 천원)

구분	총 인건비 (A+B)	종량제업무 전담인원 인건비(A)	비 전담인력 인건비(B)			비고 (전담인원 / 비전담인원수)
			소 계 (B=C×D)	비 전담인원 인건비(C)	종량제업무 수행비율(D)	
계	①					/
환경미화원						/
차량 운전원						/

※ 인건비는 주민부담율 산정표 "①"란에 기재

2) 차량관련 경비

○ 차량 감가상각비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내용연수는 정부물품관리지침에 의한 청소차량 내구연한(경제적 사용한계)인 6년을 적용
-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식 = 차량 구입 총 소요경비 ÷ 6(내용연수)

○ 차량 운영비

- 차량 운영비는 차량유지비(차량 수리·수선비 및 차량 유류비), 차량 보험료 및 차량 제세공과금(자동차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기검사료)을 합산한 금액임

[표 2. 차량 관련경비 산정표]

(단위: 천원)

차량 관련경비 (A+B)	차량 감가상각비(A)	차량 운영비(B)				비 고 (차량 대수)
		소계	차량 유지비	차량 보험료	차량 제세공과금	
②						

※ 차량 관련경비는 산정표 "②"란에 기재

3) 적환장 운영비

○ 적환장 운영비는 적환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산정함

- 적환장 운영비는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적환장을 운영하기 위한 실제 소요경비를 운영비로 산정

[표 3. 적환장 운영비]

(단위: 천원)

적환장 운영비(A+B)	인건비(A)	시설 유지·보수비(B)	비고(적환장수)
③			

※ 적환장 운영비는 산정표 "③"란에 기재

4)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비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인건비와 경비 합계액의 5%로 산정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5%(일반관리비 비율)

※ 일반관리비는 산정표 "⑤"란에 기재

나. 위탁/대행 운영시

1)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업무만 위탁/대행하는 경우

○ ‘갑’형(일반 계약) : 자치단체와 대행업체간의 연간 계약금액을 수집·운반비용으로 산정

○ ‘을’형(독립채산형 계약) : 대행업체의 봉투 판매수입 중 봉투 제작비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지자체 등에 납부한 금액(대행업체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집·운반비용으로 산정

- 산정식 : 봉투 판매수입 - 대행업체 부담액(봉투제작비 및 폐기물 처리비)

※ 독립채산형 계약이란 연간 계약금 대신 대행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그 수입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경비를 충당하도록 계약한 형태임

※ 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봉투 판매소 이익금 등)를 제외한 봉투 판매 실제 수입임

2)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업무 이외의 업무도 함께 위탁/대행하는 경우

○ ‘병’형(일반 계약) : 연간 계약금액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업무/총 위탁업무 × 100

○ ‘정’형(독립채산형 계약) : (봉투 판매수입 - 대행업체 부담액) × 종량제업무 수행비율(%)

[표 4. 계약형태별 수집·운반비용 산정표]

(단위: 천원)

계약형태	연간 수집·운반비	계약금액 (A)	봉투 판매수입(B)	대행업체 부담액(C)	종량제업무 수행비율(D)
‘갑’형	A				
‘을’형	B-C				
‘병’형	A×D				
‘정’형	(B-C)×D				

○ 지자체별로 위탁/대행 계약형태(4가지 유형)를 선택하여 해당 부분만 작성

- 작성 예시 : ‘갑’형의 경우 연간 수집·운반비란과 계약금액란만 작성, ‘정’형의 경우 연간 수집·운반비란과 봉투 판매수입, 대행업체 부담액 및 종량제업무 수행비율란 작성

※ 위탁/대행시 수집·운반비는 산정표 “⑦”란에 기재

(3) 처리비용 산정방법

가. 자체 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위탁처리시

○ 타 처리시설에 위탁처리시 그 위탁처리비(반입수수료)를 처리비용으로 산정

※ 타 처리시설에 위탁처리시 폐기물 처리비(반입수수료)는 산정표 “⑨”란에 기재

나.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시

○ 자치단체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그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용을 폐기물 처리비로 산정

- 처리시설 운영비는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전력비, 약품비, 시설 유지보수비) 및 기타 비용(부대장비 구입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

○ 자체 처리시설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폐기물와 기타 폐기물을 함께 반입·처리시에는 총 반입량중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 만큼만 처리비용으로 산정

- 폐기물 처리비 : 처리시설 운영비 ×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

※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 :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량/총 폐기물 반입량 × 100

[표 5. 쓰레기 처리비 산정표]

(단위: 천원)

구분	처리시설 운영비(D)				종량제봉투 폐기물 반입비율(E)	**폐기물 처리비 (F=D×E)**
	소 계	인건비 (A)	관리비 (B)	기타 비용 (C)		
계						⑩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시 폐기물 처리비(처리시설 운영비)는 산정표 “⑩”란에 기재

❑ 종량제봉투 제작비 산정방법

○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함

※ 연간 총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산정표 “⑫”란에 기재

2.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산정방법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봉투 판매소 이익금 등)를 제외한 종량제봉투 판매 실제수입을 산정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산정표 "⑭"란에 기재

3. 주민부담율 산정

○ 주민부담율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나누어 산정

○ 주민부담율(%)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비용 × 100

※ 주민부담율은 산정표 "⑮"란에 기재

붙임 3

종량제봉투 검체채취 및 판정기준

1. 검체의 채취자

검체의 수거는 검수담당 공무원이 실시한다

2. 검체채취 및 현품보관

봉투제작업체로부터 제작완료를 통보 받은 검수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전량을 인수하여 관리가 가능한 창고에 입고시킨 후 지체없이 검체를 채취하고, 납품된 물품은 시험분석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업체별로 Lot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검체 채취방법

봉투의 종류별로 무작위로 검체를 채취한다.

검체의 숫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다른 대포장 단위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4. 시료의 채취량 및 합격수준

가. 인장강도, 신장률, 노치후 인열강도 시험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 중 해당항목의 규정에 따른다

나. 필름의 겉모양, 구조 및 모양, 치수, 인쇄상태, 색상, 표시, 포장상태 등의 검사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 중 해당항목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와 봉투제작업체와의 상호계약조건에 따른다

다. 접합상태 시험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 중 해당항목의 규정에 따른다

라. 함량분석시에는 다음의 방법 중에서 제조자가 선택하거나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Ⅰ 방법 : 납품량 30만매당 무작위로 1매의 시료를 채취

검사시료 전량 적합시 전체 물량을 합격처리

Ⅱ 방법 : “가”항목의 방법에 따른다

마. 검체의 Lot 구성은 종류별 1회 신청량으로 한다.

5. 확 인

검수 공무원은 계약된 물품의 수량, 구조 및 모양, 인쇄상태, 묶는 선 표시, 색상, 표시,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시험의뢰 및 결과 확인

검수공무원은 시료를 개봉이 불가능한 봉투 등에 담아 봉인한 후 공인시험기관에 겉모양, 칫수, 인장강도, 신장율, 노치후 인열강도, 함량 및 접합상태 등에 관하여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시험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직접 통보 받아야 한다.

7. 검사결과의 처리

검사결과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부를 판정하되,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에 대하여는 재검할 수 없다. 다만, 판단하여 검체의 취급, 검사기준 또는 검사방법 등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시험비용의 부담

검수시 검체의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의 제조자가 부담한다.

붙임 4

공공지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의 공원, 해수욕장 등 공공지역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말하는 공원, 유원지, 관광지, 해수욕장 및 비지정관광지 등을 말한다.
   가.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및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어린이·근린·도시지역·묘지·체육공원)을 말한다.
   나. "유원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에 의한 유원지와 기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를 포함한다.
   다. "해수욕장"이라 함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서 자치단체장이 해수욕장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라. "관광지"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공공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행정청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리책임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대형쓰레기통"이라 함은 다량의 쓰레기의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계식 상차용 롤온박스 또는 콘테이너박스 등의 용기를 말한다.

제3조(관리기관의 책무 등) ①관리기관은 관리지역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지역내 특정구역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기관이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해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를 위하여 그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해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일정 기간만 그 지정을 해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종량제봉투의 사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지역에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함에 있어 이용객으로 하여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지 않는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이 종량제봉투를 직접구입·사용토록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공공지역의 경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입장료 징수시 무료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자체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등)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사무소, 출입구 인근 상점 및 다중 집합장소에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이용자들이 종량제봉투를 쉽게 구입·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소 지정시 개소수는 출입자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종량제봉투는 낱개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쓰레기통의 설치·운영)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제2조제3호에 규정한 대형쓰레기통을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공공지역의 중심지역 또는 입구 등(이하 "공공지역의 중심지역 등"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 넘치지 않도록 하고 적기에 수거·운반하여야 한다.

제8조(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의 설치·운영) ①관리기관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공공지역의 중심지역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공공지역의 실정에 맞게 유리병, 캔류, PET병 등 3-5종으로 구분하여 배출량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여유있게 제작하여 설치하고 적기에 수거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처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지역의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해수욕장 등 쓰레기 다량발생지역에 대하여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수시로 수거·처리하여야 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수거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공공지역의 이용객 수, 쓰레기 및 재활용품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행락지 주변상가 등에 대하여 청결담당구역을 지정하여 1일 2회 이상 담당구역 청소를 의무화시키고 생활오수 등의 무단방류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대책의 수립·실시) ①관리기관은 안내방송, 안내전단, 포스터,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이용객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안내 및 봉투사용 요령
2. 이용객들의 협조·당부사항
3. 기타 공공지역의 청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관리기관은 공공지역의 입구 또는 이용객 다량집합장소에 종량제의 취지, 시행방법, 쓰레기통 및 봉투판매소의 위치, 재활용품 배출요령,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경고 내용이 담긴 현수막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지역 실정에 따라 단속가능인력을 수시로 동원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행락철 등 공공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기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소속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집중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부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지역내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 예규) 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였더라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법투기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 처분통지) ①단속공무원은 쓰레기 불법투기자 발견시 공무원증을 보여주고 위반내용을 설명한 후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이하 "처분통지서"라 한다)를 작성, 피처분자의 확인서명을 받은 후 발부하여야 한다.

②단속공무원은 처분통지서 발부시 처분통지서의 특기사항란에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처분통지서에 세입징수관 계좌번호와 시·군·구청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③단속공무원은 쓰레기 불법투기자가 주민등록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주변의 목격자 또는 동행자에게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통지서를 작성, 추후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이를 송부한다.

④단속공무원은 쓰레기 불법투기자가 차량운행중일때는 차량번호, 적발일시 및 장소를 처분통지서에 기재(또는 사진촬영)하고 추후 차적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를 파악하여 이를 송부한다.

제14조(삭제)

제15조(민간감시원 위촉·운영)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투기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민간감시원으로 위촉 운용한다.

1. 공원, 유원지, 관광지 및 해수욕장내 지역주민
2. 자원보호협의회, 환경단체, 산악회 및 낚시회 등 민간단체 회원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감시원이 단속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 완장을 착용하게 하고 감시원증을 발급하여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쓰레기 처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공공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들에게 발생 쓰레기를 되가져가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형쓰레기통 및 재활용품배출용기를 이용객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또는 공공봉사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1회 이상 관할 공공지역에 대하여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경기장 청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축구·야구 등 주요 경기장의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관람객에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경기전, 경기중 또는 경기후에 경기장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봉투사용 또는 스스로 회수하여 되가져하게 하거나 지정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입장권의 전면 또는 후면의 적당한 위치에 쓰레기 배출요령, 경기장 청결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주요 경기장의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붙임 5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등산로·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락지역 쓰레기 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로"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내의 지역 및 도시공원법 제3조에 의한 도시자연공원내의 지역으로서 산책길로 이용되는 길 또는 그 주변지역(야영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유원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에 의한 유원지와 기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를 포함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 또는 관습에 의하여 등산로, 유원지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행정청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리책임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4. "대형쓰레기통"이라 함은 다량의 쓰레기의 투입, 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계식 상차용 롤온박스 또는 콘테이너박스 등의 용기를 말한다.
5. "등산로·유원지의 출입구"라 함은 행락객의 대다수가 출입하는 길목 또는 출입지역으로서 입산통제소, 등산로·유원지 관리기관의 매표소 또는 기타 관리사무소 등이 위치한 지점을 말한다.

제3조(관리기관의 책무) 등산로·유원지의 관리기관은 관리지역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지역내 특정구역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주변지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쓰레기통의 설치·관리) ①관리기관은 제2조제5호의 지역으로서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적정 배치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 넘치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수거·운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판 등의 설치) 관리기관은 등산로·유원지의 입구와 등산로·유원지내 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었던 장소에는 행락객의 눈에 잘 띄도록 쓰레기통 설치장소에 대한 안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고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대책의 수립·실시) 관리기관은 안내방송, 안내전단, 포스터,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행락객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1.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의 필요성
2. 이용객들의 협조사항
3. 기타 등산로·유원지 청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붙임 6

쓰레기 종량제 추진실적 보고

〈작성기준: 매년 12월 31일 기준〉

1. 쓰레기 종량제 일반현황

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현황

(단위: 개소)

시도별	전체행정구역 (A=B+C)		생활폐기물관리지역 (B)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C)	
	읍면동수	가구수	소 계		종량제 실시 (종량제봉투 사용)		종량제 미실시 (종량제봉투 미사용)		읍면동수	가구수
			읍면동수 (D=F+H)	가구수 (E=G+I)	읍면동수 (F)	가구수 (G)	읍면동수 (H)	가구수 (I)		
합계										
00구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전체행정구역의 읍·면·동수는 전국행정구역현황과 일치, 가구수는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 기준, 인구통계자료와 일치

- 가구수 또는 읍면동수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 ( )로 표시

2) 종량제 실시 가구수

- 「3. 쓰레기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의 가·나 서식의 가구수와 일치
-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대상 가구수를 포함

3)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 · 오지 · 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가구수 또는 읍면동수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 ( )로 표시

나.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현황

시도별	대상지역 (A=B+C)		실시지역 (B)		미실시지역 (C)		쓰레기 수거량 (kg)	쓰레기 처리비용 (백만원)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합계								
00구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마을단위 종량제: 농어촌지역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에 의한 수거 방식이 아닌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배

다.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 적용

시도별	대상 사업장 수 (개소)	쓰레기수거량(톤)	쓰레기처리비용 (백만원)	비용 징수금액 (백만원)
합계				
00구				

1)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한 폐기물

라. 일제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

시도별	청소의 날 지정·운영여부	참여인원		쓰레기 수거량(kg)	쓰레기 처리비용 (백만원)	비고
		단체수	참여인원(명)			
합계						
00시	○					
00군	X					

1) 해당 시·군·구는 ‘청소의 날 지정·운영여부’를 ○, X로 표시
2) 참여단체는 단체수를 참여인원은 연간 참여 인원수를 각각 표시, 쓰레기 수거량 및 처리비용은 연간 기준

2. 쓰레기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 현황

가. 일반용 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

①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제작현황

(단위: 천 매, 백만 원)

시도별	구 분	계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기타1	…	제작비용
00구	계												
	HDPE 봉투												
	LLDPE 봉투												
	생붕괴성 봉투												
	탄산칼슘 봉투												
	생분해성 봉투												
	특수규격 봉투 (PP마대 등)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대상으로 작성**
- **<u>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공공용 봉투, 무상지급 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실적 제외</u>**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공공용 및 무상지급 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실적은 〈2.나〉 ~ 〈2.라〉 서식에 작성)
- 특수규격 봉투(PP마대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담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별도 제작한 경우 작성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
>
>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제작·판매하는 별도의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배출

2) 제작량은 당해년도에 제작된 총량을 합하여 작성 **<u>(전년도 이월량 불포함)</u>**

3) 제작비용은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른 **<u>총경비</u>**

4) 봉투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40ℓ, 60ℓ 등)

※ 재질·성분별 종량제봉투
- ○ PE(HDPE, LLDPE) 봉투: PE(합성수지)를 주원료로 제조한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 ○ 생붕괴성 봉투: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사용을 목적으로 전분을 혼합한 봉투
- ○ 탄산칼슘 봉투: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탄산칼슘을 첨가하여 제조한 봉투
- ○ 생분해성 봉투: 생분해성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제조한 봉투

②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판매현황

(단위: 천 매, 백만 원)

시도별	구 분		계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기타1	…	판매 수수료
00구	계	판 매 량												
		판매금액												
	가정용 봉투	판 매 량												
		판매금액												
	사업장용 봉투	판 매 량												
		판매금액												
	특수규격 봉투 (PP마대 등)	판 매 량												
		판매금액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대상으로 작성**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재사용 봉투 판매 실적 제외**(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실적은 〈2.나〉, 〈2.라〉 서식에 작성)
   - 특수규격봉투(PP마대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담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별도 판매한 경우 작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방법

○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제작·판매하는 별도의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배출

2) 판매금액: 쓰레기 종량제봉투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작성(판매위탁수수료 등 포함)
   - 판매금액 = 판매단가 × 판매량
   - 판매단가: 「2.가.③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판매단가」에서 인용
   - '판매량'을 기입한 봉투는 '2-가 ③'시트의 '판매단가' 필수 기입

3) 사업장용 봉투: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4) 판매수수료는 위탁판매수수료임
   - 위탁판매수수료: 지자체에서 자체 제작한 봉투를 판매소(마트 등)에 위탁할 때 부여되는 수수료. 즉, 지자체에서 봉투판매를 대행하기 위해 판매소에 지급하는 비용
   - 봉투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5) 봉투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40ℓ, 60ℓ 등)

③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판매단가

(단위: 원/매)

시도별	구 분	평균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기타1	…
00구	가정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특수규격 봉투 (PP마대 등)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봉투 **판매단가**는 <u>**2015년말 기준 소비자가격**</u>을 표시

- 판매단가가 연도 중 인상, 봉투 세부종류가 다양한 경우 등의 변동으로 인해 상이한 경우 대표단가를 기입한 후 엑셀 '메모삽입' 기능을 활용하여 세부단가 기입

2) '2-가 ②'시트의 '판매량'을 기입한 봉투는 '판매단가' 필수 기입

- '판매단가'는 공표되는 자료이므로 '판매량'이 없어도 '판매단가'를 기입해도 되지만, '2-가 ②'시트의 '판매량'은 있으나 '판매단가'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3) 봉투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예: 40ℓ, 60ℓ등)

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 현황

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제작현황

(단위: 천매, 대)

시도별	구 분		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기타1	…	제작비용(백만원)
00구	계													
	전용봉투	HDPE 봉투												
		LLDPE 봉투												
		생붕괴성 봉투												
		탄산칼슘 봉투												
		생분해성 봉투												
	전용용기	납부필증(스티커)												
		납부필증(칩)												
		RFID(개별,차량)												
		기타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봉투, 용기 등) 대상으로 작성**
  - **'전용봉투'에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실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2) 제작량은 당해년도에 제작된 총량을 합하여 작성 **(전년도 이월량 불포함)**

3) 제작비용은 연간 음식물 종량제 제작에 따른 **총경비** (RFID의 경우 기기 제작비용, 국비, 지방비 모두 포함)

4)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예: 0.5ℓ, 4ℓ, 6ℓ 등)

5) "기타"는 납부필증(스티커, 칩), RFID 방식 외의 방식 등에 적용

※ 재질·성분별 종량제봉투

○ PE(HDPE, LLDPE) 봉투: PE(합성수지)를 주원료로 제조한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 생붕괴성 봉투: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사용을 목적으로 전분을 혼합한 봉투

○ 탄산칼슘 봉투: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탄산칼슘을 첨가하여 제조한 봉투

○ 생분해성 봉투: 생분해성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제조한 봉투

②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판매현황

(단위: 천 매, 백만원)

시도별	구 분			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기타1	…	판매수수료
00구	계		판 매 량												
			판매금액												
			수거량(톤)												
			수거금액												
	전용봉투		판 매 량												
			판매금액												
	전용용기	납부필증(스티커)	판 매 량												
			판매금액												
		납부필증(칩)	판 매 량												
			판매금액												
		RFID(개별,차량)	수거량(톤)												
			수거금액												
		기타	수거량(톤)												
			수거금액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봉투, 용기 등) 대상으로 작성
   - **'전용봉투'에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실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2) 판매량, 판매금액: 전용봉투, 납부필증(스티커, 칩) 방식 적용
   - 판매금액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작성(판매위탁수수료 등 포함)
   - 판매금액 = 판매단가 × 판매량
   - 판매단가 : 「2.나.③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판매단가」에서 인용
   - '판매량'을 기입한 봉투는 '2-나 ③'시트의 '판매단가' 필수 기입
3) 수거량, 수거금액: RFID(개별, 차량), 기타(정액제 등) 방식으로 처리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량 및 수거금액
4) 판매수수료는 위탁판매수수료임
5)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예: 0.5ℓ, 4ℓ, 6ℓ 등)

③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판매단가

(단위: 원/매, 원/kg)

시도별	구 분		평균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기타1	…
00구	전용봉투												
	전용용기	납부필증(스티커)											
		납부필증(칩)											
		RFID(개별,차량)											
		기타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판매단가(수거단가)**는 **2015년 말 기준 소비자가격**을 표시
 - 판매단가(수거단가)가 연도 중 인상, 봉투 세부종류가 다양한 경우 등의 변동으로 인해 상이한 경우 대표단가를 기입한 후 엑셀 '메모삽입' 기능을 활용하여 세부단가 기입

2) 전용봉투, 납부필증(스티커, 칩): **판매단가(소비자가격)**를 기입
 - ‘전용봉투’에 일반용(가정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봉투 실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3) RFID(개별, 차량) 및 기타(정액제 등): **수거단가(소비자가격)**를 기입

4) '2-나 ②'시트의 '판매량'을 기입한 봉투는 '판매단가' 필수 기입
 - '판매단가'는 공표되는 자료이므로 '판매량'이 없어도 '판매단가'를 기입해도 되지만, '2-나 ②'시트의 '판매량'은 있으나 '판매단가'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5)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예: 0.5ℓ, 4ℓ, 6ℓ등)

다. 공공용 봉투·무상지급 물품 제작 및 사용 현황

(단위: 천 매, 백만원)

시도별	구 분		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기타1	…
00구	계	제작수량													
		제작비용													
		사용·지급수량													
		환산금액													
	공공용 봉투	제작수량													
		제작비용													
		사용수량													
		환산금액													
	무상 지급 물품	제작수량													
		제작비용													
		지급수량													
		환산금액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공공용 봉투: **가로청소·마을청소용** 등으로 자치단체에서 사용한 봉투

2) 무상지급 물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영세민** 등에게 무상지급된 종량제 물품(종량제 일반용봉투, 음식물 전용봉투, 납부필증(스티커, 칩) 등 포함)

3) 제작수량 및 제작비용: 공공용 및 무상지급 물품의 제작 실적이 별도로 산출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

- 제작수량: 사용(지급)수량과 동일하게 작성 (제작수량=사용(지급)수량)
- 제작비용: 동일 용량의 일반용 봉투 제작단가를 적용하여 작성 (제작비용=제작수량×동일 용량의 일반용 봉투 제작단가)

4) 환산금액: **유상판매**시 **가격**으로 환산하되, 동일 용량의 일반용 봉투 판매소 **공급가격**(도매가격, 판매수수료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5) 규격이 양식에 없는 경우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예: 0.5ℓ, 4ℓ, 6ℓ 등)

라.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 현황

시도별	재사용 종량제봉투									재사용봉투판매소(개소)				판매수량(천 매)			
	제작량(천 매)							제작비용(백만원)	판매금액(백만원)	계	백화점	할인점	지정 판매점(슈퍼 등)	계	백화점	할인점	지정 판매점(슈퍼 등)
	계	3ℓ	5ℓ	10ℓ	20ℓ	30ℓ	기타										
합계																	
00시																	
00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할인점 기준: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 기준에 따른다(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
- SSM 및 편의점은 할인점에서 제외

※ 유통매장에서의 1회용 비닐 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비닐 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를 추진

마. 쓰레기 규격 봉투 품질관리실태 점검실적

시도별	봉투종류	시험일자	시험분석결과						점검결과	시험기관명
			인장강도 N/㎟(kgf/㎠)		신장율(%)		인열강도(N/㎜)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보통	접은곳		
합계										
00시										
00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쓰레기 규격 봉투 검수시 봉투가 **여러 종류**인 경우 **대표**적인 것을 선정하여 **하나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수량만 표시(봉투종류: 20L 외 3종)

3. 쓰레기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

가. 쓰레기 수거 방법

(단위: 가구수)

시도별	재활용품 센터 설치·운영	전 년 도(0000년)				금 년 도(0000년)			
		계	문전 수거식	주민 상차식	거점 수거식	계	문전 수거식	주민 상차식	거점 수거식
합계									
00시	○								
00군	X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해당 시·군·구는 설치·운영여부를 ○, X로 표시

2) 재활용품센터 설치·운영: 시·군·구·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3) 전년도에 보고했던 금년도 가구수는 올해 보고할 전년도 가구수와 일치

4) **금년도 합계는「1. 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현황」가구수와 일치**

나.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주기

(단위: 가구수)

시도별	구 분	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주7회	기 타
합계	쓰레기									
	재활용품									
00시	쓰레기									
	재활용품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쓰레기 가구수는 재활용품 가구수와 일치

2) 쓰레기/재활용품 가구수는「1. 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현황」가구수와 일치

3) 쓰레기/재활용품 가구수는「3. 가. 쓰레기 수거방법」금년도 가구수 합계와 일치

다.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 및 시행실적

시도별	청결유지책임제 도입·시행 (조례명)	이행명령 실적	과태료 부과실적		비 고
			건수	금액(천원)	
00구					

1) 조례 내용 안에 청결유지책임제라는 규정이 있는 조례명 기재

라.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시도별	도입여부	추진실적(지원내용)	비 고
합계			
00시	○	※ 추진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	
00군	X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해당 시·군·구는 도입·운영여부를 ○, X로 표시

마.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내역

① 쓰레기 수거내역

(단위: 톤)

시도별	계	쓰레기봉투에 의한 수거량 (음식물쓰레기 제외)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대형 폐기물	공사장 생활 폐기물	재활용품	기 타
		소계	가정	사업장	배출 불명	소계	봉투	용기				
합계												
00시												
00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배출불명쓰레기는 가로청소, 무단투기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 등
2) 쓰레기봉투에 의한 수거량
 -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을 제외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의한 수거량 작성
3) 음식물쓰레기
 - 전용봉투 수거와 용기(납부필증, RFID 등)에 의한 수거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기
4) 대형폐기물 종류
 -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폐기물
 ·가전제품류: 냉장고, 세탁기, 탈수기, 청소기, 가습기, 다리미, 팩스기기, 에어컨디셔너, 텔레비전, 전축, 컴퓨터, 스피커, 온풍기, 난로, 가스오븐렌지, 전자레인지, 선풍기 등
 ·가 구 류: 장롱, 응접세트, 식탁, 밥상, 싱크대, 책상, 책꽂이, 침대 목재 및 매트리스, 의자, 장식장, 화장대, 문갑, 서랍장, 옷걸이, 신발장 등
 ·생 활 용 품 : 쌀통, 벽시계, 인형류, 장난감류, 가방, 액자, 진열대, 캐비닛, 피아노, 기타 등
 ·기 타: 문짝, 수족관, 거울, 자전거, 유모차, 깨진 유리, 항아리, 세면대, 변기통, 장판, 카펫, 목재, 플라스틱류 등

5) 공사장생활폐기물: 공사·작업으로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의미
6) 기타: 연탄재 쓰레기 등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일치

② 재활용품 수거내역

(단위: 톤)

시도별	구 분	총계	종이류	고철류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	스티로폼	의류	비닐봉투류	기타
00구	계										
	자치단체										
	대행업체										
	기 타 (재활용등)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재활용품 수거내역 총계는 **「3.마.①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내역」 쓰레기 수거내역의 재활용품 실적과 일치**

4.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단위: 백만 원, %)

시도별	수입 항목								지출 항목								청소예산재정자립도 (A/B)
	일반쓰레기수수료 ①	음식물쓰레기수수료 ②	대형폐기물수수료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수수료 ④	사업장일반폐기물 ⑤	재활용품판매수입 ⑥	과태료 등 ⑦	계 (A)	가정쓰레기처리 ①	음식물쓰레기처리 ②	대형폐기물처리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 ④	사업장일반폐기물 ⑤	재활용품수집선별 ⑥	기타청소비용 등 ⑦	계 (B)	
00시·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청소관련 총 예산에 대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2) 수입항목(A=①+②+③+④+⑤+⑥+⑦), 지출항목(B=①+②+③+④+⑤+⑥+⑦)
3) 수입항목 설명자료: 기준년도 수입항목 결산자료로 활용하여 작성
4) 지출항목 설명자료
- 수입·지출항목은 청소예산 중 **기준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서류 자체보관

나. 주민부담률

① 주민부담률(총괄)

(단위: 백만 원, %)

시도별	수집·운반비용								처리비용			종량제물품제작비용 (C)	수집운반처리비총계 (D=A+B+C)	종량제수입 (E)	주민부담률 (E/D)
	직영시						위탁대행시수집운반비	수집운반비용합계 (A)	위탁처리시	자체처리시설	합계 (B)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직영시소계									
		차량관련경비	적환장운영비	소계											
합계															
00시															
00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생활폐기물 종량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주민부담률 총괄로 ②번과 ③번 항목을 작성한 후 자동 산출되므로 작성 금지

②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

(단위: 백만 원, %)

시도별	수집·운반비용								처리비용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 (C)	수집운반 처리비 총계 (D= A+B+C)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E)	주민 부담률 (E/D)
	직영시						위탁 대행시 수집 운반비	수집 운반 비용 합계 (A)	위탁 처리 시	자체 처리 시설	합계 (B)				
	인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직영시 소계									
		차량 관련 경비	적환 장운 영비	소계											
합계															
00시															
00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 세부 작성방법은 '[붙임1] 주민부담률 산정표 및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1)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공공용 봉투 쓰레기(가로청소, 마을청소 등)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대형폐기물 관련 소요경비 등은 제외

2)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은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봉투제작비, 조달수수료, 공급대행료 등)
 -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2.가.① 서식의 일반용 봉투 제작비용 + 2.라 서식의 재사용봉투 제작비용
 - 공공용·무상지급 봉투 제작비용은 제외

3)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한 후 판매소 수수료,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종량제봉투 판매로 인한 순수익을 의미)
 - 공공용·무상지급 봉투 판매수입(환산금액)은 제외

4)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 산정기준 제시

$$- \text{종량제봉투 주민부담률(\%)} = \frac{\text{종량제봉투 판매수입}}{\text{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times 100$$

③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률

(단위: 백만 원, %)

<table>
<tr><th rowspan="4">시도별</th><th colspan="8">수집·운반비용</th><th colspan="3">처리비용</th><th rowspan="4">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제작비용 (C)</th><th rowspan="4">수집운반 처리비 총계 (D= A+B+C)</th><th rowspan="4">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입 (E)</th><th rowspan="4">주민 부담률 (E/D)</th></tr>
<tr><th colspan="6">직영시</th><th rowspan="3">위탁 대행시 수집 운반비</th><th rowspan="3">수집 운반 비용 합계 (A)</th><th rowspan="3">위탁 처리 시</th><th rowspan="3">자체 처리 시설</th><th rowspan="3">합계 (B)</th></tr>
<tr><th rowspan="2">인건비</th><th colspan="3">경비</th><th rowspan="2">일반 관리비</th><th rowspan="2">직영시 소계</th></tr>
<tr><th>차량 관련 경비</th><th>적환 장운 영비</th><th>소계</th></tr>
<tr><td>합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00시</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00군</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 세부 작성방법은 '[붙임1] 주민부담률 산정표 및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1)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별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별(RFID기반방식, 칩(스티커)방식, 종량제봉투 방식)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2)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제작비용은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물품(RFID장비, 칩(스티커), 봉투 등)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제작비, 조달수수료, 공급대행료 등)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제작비용 = 2.나.①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물품 제작비용

3)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입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별 전용봉투, 납부필증(스티커, 칩) 등의 선납부 수수료에서 소요경비를 제외하여 실제 수입으로 산정(후불방식의 RFID 납부수수료 포함)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입으로 산정한 후 판매소 수수료, 제작비 등 실제 소요경비를 수입에서 제외 (전용봉투, 납부필증(스티커, 칩) 등의 판매로 인한 순수익을 의미)
  - 무상지급 봉투, 칩 등의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부담률 산정기준 제시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 = $\frac{\text{종량제 방식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수입}}{\text{종량제 방식별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times 100$

5. 대형폐기물 배출 및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

가.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단위: 개)

시도별	읍면동 신고	봉투판매소	수거대행 업체지정	인터넷신고	기타	대상 품목수
00시	○	○	○	○	X	
00군						

1) 해당 시·군·구는 실시여부를 ○, ×로 표시

2) 해당란에 중복 표시도 가능

나. 대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시도별	발생량 (kg)	처리량(kg)					수입·처리비용(천 원)			
							수입(수수료)			처리비용
		계	소각	매립	재활용	기타	소계	직영	위탁	
00시·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발생량 = 처리량의 합계와 일치

2) 수입(수수료)은 직영 또는 위탁으로 나누어 표시

3) 대형폐기물 수입 및 처리비용은「**4.가.청소예산 재정자립도**」의 **③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처리비와 일치**

다.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처리체계

① 분리수거 실시여부

(○: 실시, ×: 미실시)

시도별	분리수거 실시여부			유·무상 수거여부	
	분리수거		미분리수거	유상	무상
	전지역	일부 지역			
00시	○	X	X	○	X
00군					

1) 해당 시·군·구는 분리수거 여부를 ○, ×로 표시

② 수거·처리실적

(단위: 톤)

시도별	수거실적 (톤)	처리실적(톤)					
		계	재활용업체		수출	자체비축	기타
			유상	무상			
00시·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수거실적 = 처리실적의 합계와 일치

6.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실적

가. 단속반 편성운영 방법

(○: 실시, ×: 미실시)

시도별	포상금제운영 (조례명)	사법경찰관 지정운영	민간 감시반 운영	취약지 상주 단속반 운영	민간위탁 단속	기타
00시	○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00군	X					

1) 실시여부는 ○, ×로 표시
2) 조례 내용 속에 포상금운영이 있으면 그 조례명 기재

나. 공무원에 의한 단속실적

(단위: 건, 천 원)

시도별	유 형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		주민 계도 건수	과태료 징수		과태료 미납		비송 사건 이송 처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계									
	쓰레기·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비규격봉투에 의한 투기									
	불법소각									
	행락지에서 쓰레기 방치									
	운전장비로 쓰레기 투기									
	사업장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금지

1) 단속건수 = 과태료부과건수 + 주민계도건수 + 비송사건 처리건수
2)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징수 + 과태료 미납

다. 주민신고 실적

(단위: 건, 천 원)

시도별	구 분	신고건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미부과 건수	과태료 징수		과태료 미납		포상금 지급		비송사건 이송처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계											
	쓰레기·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비규격봉투에 의한 투기											
	불법소각											
	행락지에서 쓰레기 방치											
	운전장비로 쓰레기 투기											
	사업장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1) 신고건수 = 과태료부과 건수 + 과태료 미부과 건수 + 비송사건 처리건수

2)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징수 + 과태료 미납

라.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현황

(단위: 천매, 건, 개소)

시도별	불법 제작·유통량	적발건수	적발업체수	비 고
합계				
00시				
00군				

※ 회색 입력 셀은 자동 입력되므로 입력 대상 셀 아님

붙임 7

'00년 연휴기간(설 · 추석) 쓰레기 관리대책

1. “생활쓰레기” 중점 수거대책 추진

❍ 지역별 쓰레기 **수거일 조정,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및 지역주민 **사전 홍보**

❍ 연휴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 **생활쓰레기 민원, 투기 신고** 등의 **신속한 대처**
- 쓰레기 **투기 우려지역** 등에 대한 **수시 확인 및 집중 수거활동** 전개

2.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유도 및 적정 처리

❍ 명절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지역 **언론사, 반상회보, 아파트 게시판**, 옥외 전광판 및 현수막 등

❍ **당일처리 원칙**의 수거체계 구축·운영으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의 **신속 처리**

3. 주요 도로변 정체구간 쓰레기 무단투기 등 계도·단속 및 홍보

❍ 쓰레기 투기행위 예방 등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언론매체**(교통방송 등), 전광안내판, **휴게소 안내방송** 및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및 휴게소·여객터미널 등 상습 **쓰레기 투기 우려지역**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계도·단속** 강화

❍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 쓰레기 **분리수거 등 관리 강화**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재활용기준 이행여부** 등 점검 및 개선유도

〈 대책분야별 추진일정 〉

구　분	추 진 일 정		
	연휴이전	**연휴기간**	연휴이후
ㅇ**연휴 기간**			
ㅇ쓰레기 수거 등 대국민 홍보			
ㅇ상황실, 기동청소반 운영			
ㅇ무단투기 특별단속			
ㅇ현장점검·평가			
ㅇ마무리 대청소			

붙임 8

'00년 ○○○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실적(서식)

1. 추진결과

❑ 작성기관 : 시·도

○ 대국민 홍보실적

- 쓰레기 **수거일** 등 대주민 **사전 홍보**

구 분	현수막 입간판	홍보 유인물	대중매체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TV	라디오	신문	반상회보 등 소식지		
계	(개소)	(매)	(회)	(회)	(회)	(회)	(게시기간)	
○○시·군								

※ 기타 : 그 내역을 기록

-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구 분	현수막 입간판	홍보 유인물	대중매체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TV	라디오	신문	반상회보 등 소식지		
계	(개소)	(매)	(회)	(회)	(회)	(회)	(게시기간)	
○○시·군								

※ 기타 : 그 내역을 기록

○ 쓰레기투기 계도·단속실적

구 분	참여인원		계도·단속 지역	계도·단속 횟수	투 입 연인원	과태료 부과	
	반 수	인원 수				건수	금액
계	(반)	(명)	(개소)	(회)	(명)	(건)	(만원)
○○시·군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실적

- 일반쓰레기

구 분	청 소 횟 수	청 소 지 역	수거·처리량			청소인력 (연인원)
			계	소각·매립 등	재활용	
계	(회)	(개소)	(톤)	(톤)	(톤)	(명)
○○시·군						

- 음식물쓰레기

구 분	수 거 횟 수	수 거 지 역	수거·처리량			청소인력 (연인원)
			계	소각·매립 등	재활용	
계	(회)	(개소)	(톤)	(톤)	(톤)	(명)
○○시·군						

❑ 작성기관 : 공사·공단

❍ 대국민 홍보실적

구 분	현수막 입간판	홍보 유인물	대중매체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TV	라디오	신문	반상회보 등 소식지		
계	(개소)	(매)	(회)	(회)	(회)	(회)	(게시기간)	

※ 기타 : 그 내역을 기록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실적

노선명	상습 지·정체구간		쓰레기 수거함 설치	청소인력 (연인원)	쓰레기 수거량	홍보실적			
	지역	거리				전광판 홍 보	현수막 설 치	방송	기타
계	(개소)	(㎞)	(개)	(명)	(톤)	(개소)	(개소)	(회)	

※ 기타의 경우 내역을 ( )에 표시

2. 추진성과(공통)

❍ 잘된 점,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붙임 9

'00년 휴가철 피서지 · 행락철 쓰레기 관리대책

1. 단계별 활동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처리 추진

○ (사전정비) 홍보·계도활동 및 수거함 비치 등 수거체계 점검

○ (중점관리) '상황반' 운영 등 비상청소체계 가동,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

○ (사후관리) 마무리 대청소, 자체점검 및 평가

2. 신속한 쓰레기 수거·운반체계 구축

○ 민원 및 투기신고 등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상황반',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운영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쓰레기 배출·보관·처리체계 구축 및 적기 수거처리

-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유도 및 임시판매소 설치 등 피서·행락객의 불편 해소방안 마련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및 음식물 쓰레기 적정 처리 등

○ 민·관·군 합동 쓰레기 수거 등 범국민운동 전개

- 지역 내 NGO, 종교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과 연계한 홍보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을 실시하여 시너지효과 극대화

3.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 및 문제점 등을 집중홍보, 국민의 경각심 고취

○ 직장인·학생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발생억제 및 수거요령 등 홍보

- 봉사활동실적확인서 발급 등 인센티브 부여, 반상회 개최·홍보, 현수막·안내판 설치 등

4.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 **검·경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 계도·단속 강화**(공공질서 위반행위 단속과 병행)

- 위반행위 주요 발생지역 및 시간대 등에 따라 경찰과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집중단속 실시

❍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계곡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운영

- 주요 **고속도로 정체구간**과 **휴게소** 등은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특별대책 근무반**' 편성, 단속 활동실시(위반자 지자체 통보)

❍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 각종 위반행위 지도·단속

-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순찰강화 등**

붙임 10

'00년 휴가철 피서지 · 행락철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실적(서식)

❑ 공통사항

❍ 총　평(전반적인 청결유지 상태 평가)

-

❍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 조치요구 및 개선결과

-

❍ 수범사례

-

❍ 기타 건의사항 등

❑ 작성기관 : 시·도

❍ 대국민 홍보실적

기관별 (시·군·구)	현수막 입간판	홍보 유인물	대중매체 광고				전광판
			T V	라디오	신문	반상회보 등 소식지	
계	(개소)	(매)	(회)	(회)	(회)	(회)	(개소)

○ 쓰레기투기 단속 실적

기관별	단속반 편성		단속지역	단속회수	참 여 연인원	과태료 부과	
	반 수	인원 수				건수	금액
계	(반)	(명)	(개소)	(회)	(명)	(건)	(만원)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실적

기관별 (시·군·구)	대상지역 (피서·행락지)	쓰레기 수거·처리량			쓰레기 수거함	청소인력 (연인원)
		계	소각·매립 등	재활용		
계	(개소)	(톤)	(톤)	(톤)	(개)	(명)

❑ 작성기관 : 공사·공단

노선명	정체구간		쓰레기 수거함	청소인력 (연인원)	홍보실적		
	지 역	거 리			전광판 홍 보	현수막 설 치	보도자료 배 포
계	(개소)	(㎞)	(개)	(명)	(개소)	(개소)	(회)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02

2017. 12. 13.

CONTENTS

Ⅰ. 목적 ········· 87

Ⅱ. 기본원칙 ········· 87

Ⅲ. 세부 시행지침 ········· 87

1.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 87
2.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 88
3. 농어촌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91
4.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 91

Ⅳ. 행정사항 ········· 92

[붙임 1]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적 보고 ········· 93

Ⅰ. 목적

○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으로 버려지는 중금속 및 유기화합물질 등이 함유된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기본원칙

○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의미함

○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 적용대상 폐기물은 폐살충제, 폐농약,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폐형광등, 수은함유 폐기물, 폐주사기, 폐납산배터리, 폐의약품 등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로 함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분리수거함 설치 및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함

Ⅲ. 세부 시행지침

1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

○ 내용물이 용기에 들어있는 경우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여 배출

○ 깨어진 폐형광등, 폐주사기 등 날카로운 폐기물은 신문지 등으로 포장 후 딱딱한 종이 또는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

○ 폭발 및 인화성 폐기물은 유해특성을 가급적 제거하여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투명한 비닐 등에 넣어 입구를 밀봉하여 폭발 및 인화성을 알리는 표시 후 배출

○ 수은온도계, 수은혈압계 등 수은함유 폐기물은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한 후 투명한 비닐 등에 넣어 입구를 밀봉하여 배출

○ 폐납산배터리는 전해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전도·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함이나 인근 차량 정비업체 등에 배출

나 폐기물 배출시간 지정·운영

○ 폐기물 수거여건 등에 따라 지역별로 배출시간을 지정하되, 상시 또는 일정한 주기로 배출하도록 규정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함의 설치

1) 분리수거함의 종류

○ 폐주사기,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 폐농약, 폐납산배터리 등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출함을 제작하고 폐기물 표지판을 설치(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등에 배출)

2) 분리배출함의 형태·재질

○ 폐기물의 내용물이 배출함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금속재질 또는 HDPE 재질 등 강도가 강한 재질을 사용

○ 분리배출함의 형태는 지역별 발생 특성에 따라 형태 및 규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제작·사용

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분리수거 방법

1) 분리수거 장소 지정 등

○ 아파트, 다세대 및 단독 주택지역내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및 수거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여 수거장소로 지정하고 배출시간, 배출요령 등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및 홍보실시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다세대 주거형태의 경우 일반 재활용 분리수거 구역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 구역을 구분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운영

- 수거장소 지정이 어려운 단독주택 및 농어촌 지역은 문전수거, 대면수거 및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을 통하여 배출

* 거점 수거시설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 생활폐기물과 구분하여 구획을 정하거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거함 등을 설치

○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종류별(3~4종)로 분류하여 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참여도, 수거 및 선별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에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

2) 수집·운반 방법 등

○ 지역별 수거 장비·인력 여건 및 분리수거 용기 설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수거요일, 수거품목을 지정·운영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일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과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관리

- 수집·운반 과정에서 분리배출된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수거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품목별로 수거가 어려운 지역은 2~3종으로 단순화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게 수거

○ 인접 자치단체간 협의하에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전체 또는 품목별 공동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수거장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

○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업체에 대행하는 경우 경제성이 낮은 품목의 수거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3) 특별관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수거 방법

○ 폐농약,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은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하여 수거

○ 폐의약품의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적용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

- 의약품도매상 등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폐의약품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처리 체계 내에서 처리하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및 수수료 부과·징수

○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도록 약국 등 배출장소에 안내문 게시 또는 안내표지판 부착 등 유도

-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서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관리

○ 지자체 별로 가정 내 폐의약품을 배출장소로 지정된 약국 등을 통해 배출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지자체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방송 및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내 폐의약품 배출방법 등을 적극 홍보
- 지역별 관련단체(지역 약사회 등) 등와 협의를 통해 "매월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집중 수거 실시(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예시) "매월 셋째 수요일을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

○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 보건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처리주기 조정 가능

3 농어촌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지역 중 폐기물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인구 밀도가 낮아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공동 수거

- 군단위 지역 중 읍면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 후 확대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전담 수거반을 구축·운영하는 방안 강구

- 농어촌 마을 순회를 통한 정기 수거활동으로 주민들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편의성 제고,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 사전예방·단속 실시

4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방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발생 및 처리 현황,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처리계획을 수립·시행

○ 폐형광등(생산자 책임 재활용 의무 대상 폐기물)은 자치단체 및 재활용시설 여건에 따라 민간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폐농약 및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실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

나 홍보 및 교육 실시

○ 수범사례 발굴·전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시

○ 지역단위 각종 행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순회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주변에 전파되도록 유도

Ⅳ.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지침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붙임1]의 양식에 의거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적을 익년 3월말까지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 제출

○ 종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13.11.29, 폐자원관리과- 4660호)는 폐지함

붙임 1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적 보고

(OO 시·군·구: 12.31일 기준)

1.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일반현황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단위: 개소 수)

시·도별	전체행정구역 (A=B+C)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역 (B)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제외지역 (C)	
	읍면동수	가구수	소 계		수거 실시		수거 미실시		읍면동수	가구수
			읍면동수	가구수	읍면동수	가구수	읍면동수	가구수		
합계										
00시										
00군										

* 가구수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수**만 기재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현황

❑ 분리수거 실시 여부

시·도별	분리수거 실시여부(시·군·구)					유·무상 수거여부(시·군·구)	
	분리수거				미분리수거	무상	유상
	전지역	아파트 전체	아파트 일부	기타			
00시							
00군							

※ 해당 시·군·구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분리수거 여부를 ○, ×로 표시

❑ 수거 방법

(단위: 읍면동 수)

시·도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운영	수거 방법			
		소계	문전 수거식	거점 수거식	기타
합계					
00시					
00군					

❑ 수거 주기

(단위: 읍면동 수)

시·도별	계	주 1회 이상	월 2회	월 1회	분기 1회	분기 1회 이상
합계						
00시						
00군						

3.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량

(단위: 톤/년)

시·도별	계	폐의약품	폐 농약	수은함유 폐기물 (폐형광등, 폐온도계, 폐혈압계 등)	기타 (폐페인트, 폐배터리, 폐접착제 등)
합계					
00시					
00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03

환경부훈령 제1269호(2017. 7. 19.)

환경부훈령 제126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훈령 제1104호, 2014. 7. 1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7년 7월 19일

환경부장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이하 “시 · 군 · 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 보관 · 수거 · 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형폐기물, 1회용 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 등 별도의 수거 ·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 · 군 · 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배출의 유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소 4종이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등),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단,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 배출방식은 별표1의 제4호(재활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요령)의 배출 요령을 따라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처리 과정 등을 기계화·자동화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수거일의 지정·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편의와 수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기에 수거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분리수거용기의 설치·관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수거방식으로 수거하거나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의 특성, 배출품목·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되, 분리배출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및 교체하는 분리수거용기는 별표 2에 따라 품목별 색상을 적용하여야 하고, 기존에 제작·비치된 분리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색상 적용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통합수거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배출에 적합한 재활용품 통합 전용봉투, 유리병 전용봉투, 전용그물망 등 지역여건에 알맞은 통합 전용용기를 선택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 또는 통합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재활용품의 파손 우려가 없고 위생적인 차량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편의 및 자동선별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이 적체되지 않도록 간이보관장, 분리수거용기 설치지역 등 분리배출 장소 또는 통합배출 장소를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선별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운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가정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지역에서의 수거·운반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의 수거·운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선별·처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집하선별장에 이송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③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 포장재 중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 형광등, 전자제품, 전지류에 대하여 수거 · 선별 후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에서 수거되는 물량이 비교적 적은 제품 · 포장재(전지류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력하여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수거된 제품 · 포장재를 함께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분리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분리수거실태의 점검) ①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조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역사 · 터미널 · 휴게소 · 공원 · 유원지,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 · 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 · 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별표 3의 점검표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재활용여건과 행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전체에 대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건물 · 토지 면적, 폐기물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특별히 점검하기 위한 폐기물배출자(이하 “특별점검대상 배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법 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법 제28조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여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선별·처리과정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장비의 이용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처리시설 공동활용 등 재활용기반시설의 광역화를 통하여 재활용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7.1.31.]

제12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법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자에게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의 자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 · 주민참여 촉진)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제적유인 제공 등 주민참여 촉진수단을 통하여 관할구역내의 분리수거 및 통합배출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분리배출 방법 위반 단속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법 제41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일정 수량 이상의 재활용가능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 매립 · 소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지침 마련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분리수거량의 조사 · 보고 · 공표 등) ①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 포장재를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분류된 세부 품목별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리수거한 수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③분리수거량은 집하선별장에서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된 상태의 중량기준으로 조사하되, 미선별 상태로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재활용업체의 선별량을 기준으로 한다.

④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과 분리수거량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시 · 도에 제출하고 시 · 도지사는 이를 취합 ·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조사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매년 4월말까지 신문 · 방송 · 인터넷 매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⑥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분리수거 되지 아니하여 종량제봉투 등에 일반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세부품목별 수량을 연간 2회 이상 계절을 달리하여 표본조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을 직접 민간사업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를 위탁하는 토지, 건물 또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매년 분리수거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7.07.1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가.종이팩	o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말려서 반드시 일반 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압착하여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나.유리병	o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은 별도로 분리 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금속캔	o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o기타캔류(부탄 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성 수지류	o 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o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전지류	o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나.타이어	o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윤활유	o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	o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형광등	o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비고 1.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3.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종이류 (고지류)	o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o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o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o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고철류	o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o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다.의류 및 원단류	o 면의류 o 기타 의류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o식물성 섬유(면, 마 등) o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o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o기타 합성섬유류	
라. 영농 폐기물류	o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o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마. 소형가전 제품 및 이차 전지류	o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o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바. 자동차 부품	o 폐납산배터리	-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지역내에 설치한 전용수거함 또는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의 설치·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4. 재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분리수거 요령

구 분	종 류	세부품목	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	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병뚜껑을 분리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비닐류 등에 담아 배출
	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기타캔류 (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	종이류	책, 신문지, 박스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와 같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통합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2

분리수거함 품목별 색상 (제6조제2항 관련)

품 목	색 상	적용사례				
		전체적용	뚜껑적용	라벨적용	뚜껑, 라벨, 모형 적용	걸이형 레이블 적용
캔류	회색					
유리병	주황색					
종이팩	녹색					
PET병	노랑색					
플라스틱류	파랑색					
비닐(필름)류	보라색					
소형가전류	빨강색					

※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품목별 그림 또는 모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수거용기 또는 설치장소에 품목별 분리배출요령 안내문 부착

별표 3

통합배출 전용용기 종류(제6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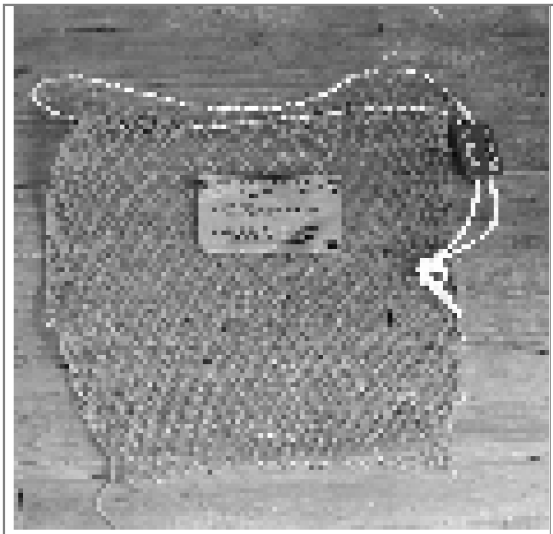

재활용 그물망
80리터(원사2㎜/700㎜×800㎜, 그물코25㎜×25㎜ / 조임줄·표찰부착), 재질 PE, 색상 녹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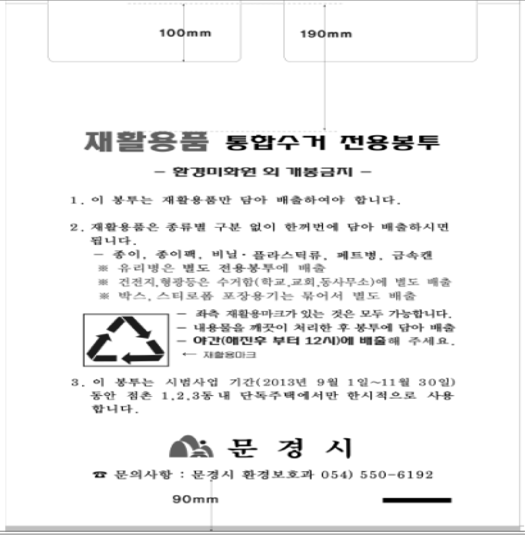

재활용 전용봉투
70리터(두께0.04㎝/60㎝×90㎝), 재질 HDPE, 색상 투명색

세종시 재활용 전용봉투
50리터(두께0.04㎝/58㎝×80㎝), 재질 HDPE, 색상 옅은하늘(반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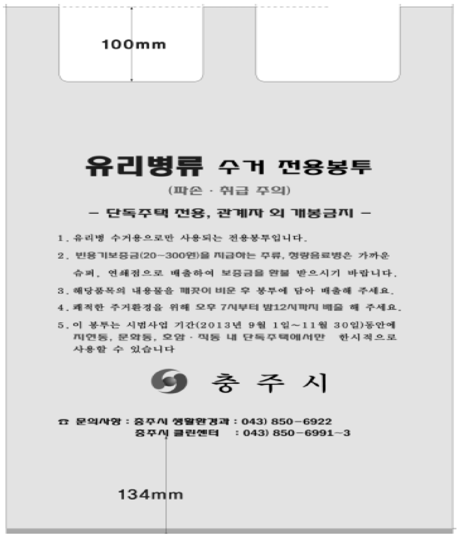

충주시 유리병 전용봉투
20리터(두께0.04㎝/45㎝×65㎝), 재질 HDPE, 색상 연분홍색

별표 4

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실태점검표

(시·군·구명)

1. 시설 일반현황

<table>
<tr><td>시 설 명</td><td colspan="3"></td><td colspan="2">용 도</td><td colspan="2"></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4"></td><td colspan="2">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2">소 유 자
(관리자)</td><td colspan="7">성명 :</td></tr>
<tr><td colspan="7">주소 :</td></tr>
<tr><td>폐기물배출량</td><td colspan="7">주기: (일, 주), 배출량 : (kg)</td></tr>
<tr><td rowspan="4">재활용가능자원 배출량 및 처리량</td><td rowspan="3">품 목</td><td rowspan="3">수집량
(kg/일)</td><td colspan="4">처 리 방 법</td><td rowspan="3">현 재
보관량
(kg)</td></tr>
<tr><td colspan="2">자가재활용</td><td colspan="2">위탁재활용</td></tr>
<tr><td>방 법</td><td>량
(kg/일)</td><td>방 법
(위탁업체명)</td><td>량
(kg/일)</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주요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1. 재활가능자원 분리수집 장소, 용기 확보여부 및 설치 적정성	o 분리수집장소 및 품목별용기 확보 여부 o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 위치의 적정 여부 o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의 규모 적정 여부 o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에서의 재활용품 보관의 적정 여부 ※ 1. 용기에 배출된 재활용품이나 선별, 분리된 재활용품이 무단방치 등으로 폐기물화 되거나 품질이 악화되는지 여부 등 확인 2. 형광등 분리수집·보관을 위한 장소 및 용기확보 및 적정성 여부 확인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2.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보관·운반 등 적정 여부	ㅇ 점유자의 분리수집장소(용기 포함)에서의 품목별 배출, 보관, 운반 등 여부 ※ 점유자는 시설 안의 개별 사업자를 포함	
3. 폐기물의 재활용가능자원과의 혼합배출 여부	ㅇ 점유자의 재활용가능자원과 그외 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여부	
4.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의 적정처리 여부	ㅇ 자가 재활용 또는 수거기관 및 재활용업자로의 공급 여부 ※ 자가 재활용방법 또는 재활용업자로의 공급시 적정 재활용업자 여부 확인(계약서 등 확인)	
5.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집 안내·계도 실시 여부	ㅇ 분리배출 안내문 게시 또는 방송 등 안내·계도 실시 여부	

3. 위반 또는 조치내역

구 분	위 반 내 역					조치내역		
	분리수집 장소·용기 미확보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보관 등 부적정	재활용가능자원 처리 부적정	분리배출 안내·계도 미실시	기타	현장 계도	이행 명령	과태료 부과
위반 또는 조치 여부								

* 위반내역 건수의 합계와 조치내역건수의 합계는 동일해야 함

4.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00년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 보고

(시·도명)

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시설·장비확충

❑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차량

구 분	재활용가능자원 전담차량	일반쓰레기와 병행수거
계	대	대
시군구명	대	대

❑ 분리보관용기 설치현황

구 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계				
시군구명				

❑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용 용기 제작현황(단독, 공동주택, 상가지역등)

구 분	비닐포대	바구니	그물망	기타용기	미제작
계					
시군구명					

❑ 집하선별장·간이보관장 현황

- 총괄

구 분	집하선별장(시군구단위)		간이보관장(읍면동단위)		간이보관소
	개소수	부지면적(평)	개소수	부지면적(평)	(개소수)
계					
시군구명					

- 자동선별장(시군구 집하선별장중 캔·플라스틱 등 자동선별기와 컨베이어시스템이 설치된 곳)

구 분	개소수	시설면적 (평)	처리물량 (연/톤)	설치주체 (민간/직영)	운영주체 (민간/직영)
계					
시군구명					

- 부대장비

구 분	선별기	압축기	계량대	감용기	상차기	파쇄기	기 타
계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시군구명	대	대	대	대	대	대	대

2.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체계

❑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주체

구 분	전지역 직영	일부지역 직영 또는 민간대행	전지역 민간대행
계			
시군구명			

❑ 분리배출기준

구 분	구 분	2종	3종	4종	5종이상	미분류	기 타
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 등						
시군구명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 등						

* 미분류는 모든 재활용가능자원을 함께 배출하는 경우임

❑ 분리수거품목 추가지정품목

시군구명	품 목 명

❑ 수거방법

구 분	구 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계	대면수거			
	문전수거			
	거점수거			
	대면+거점수거			
시군구명	대면수거			
	문전수거			
	거점수거			
	대면+거점수거			

❑ 수집·운반방법(번호 기입)

구 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계			
시군구명			

① 2종 분류 운반(유리병, 기타 재활용품, 또는 폐지와 기타 재활용품등)
② 3종 분류 운반(폐지·유리병·기타 재활용품)
③ 4종이상 품목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④ 품목별 정기수거일(요일) 지정·수거
⑤ 혼합하여 수집·운반, ⑥ 기타

❑ 수거주기

구 분	구 분	주1회	2회	3회	매일	격주	기타
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시군구명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3. 폐기물배출자 분리수거실태 점검실적

❑ 점검실적 개요

구 분	점검 대상 (개소)	위반 시설 (개소)	위 반 내 역					조치내역(개소)		
			분리수집 장소·용기 미확보	재활용품 분리배출·보관등 부적정	재활용품 처리 부적정	분리배출 안내·계도 미실시	기타	현장 계도	이행 명령	과태료 부과
계			건	건	건	건	건			
시·군·구명			건	건	건	건	건			

작성방법 1) 위반시설은 위반내역이 1건이라도 있는 시설수를 기재
2) 위반내역 건수의 합계와 조치내역 건수의 합계는 동일하게 기재

❑ 특별점검대상 배출자 현황

구 분		배출자 명	대표자 (또는 관리자)	주 소	연락처	점검 횟수 (회/년)
번호	시·군·구					
1						
2						
⋮	⋮	⋮	⋮	⋮	⋮	⋮

4. 재활용가능자원 등 교환·판매실적(민간단체 위탁 포함)

❑ 재활용센터·재활용제품 판매장 설치·운영

구 분	재활용센터*		재활용제품 판매장		알뜰교환시장	
	개소수	교환판매건수 (점)	개소수	연간판매액 (천원)	개최 회수	운영실적 (점)
계						
시·군·구명						

*) 가전·가구등 중고물품 재활용센터를 의미(재활용품 간이보관소 아님)

5. 재활용 홍보실적

구 분	신문(회)	방송(회)	프랑카드(매)	유인물(매)	기 타
계					
시군구명					

6. 중점 추진시책

시·군·구명	제 목	시책내용 및 일정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00년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조사 보고

1. 일반현황

지자체명(홈페이지)(1)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부서(2)		담당자(3)	
	전화번호(4)	( ) -	담당자 e-mail(5)	
주 소(6)	시·도 시·구·군 동·읍·면 리 번지			

2. 세부 품목별 분리수거량(연간 기준)

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분리수거량

(단위: 톤, kg/년)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7)			지자체 분리수거량(8)		
종 류		세 부 품 목	계	지자체 직접수거 또는 민간위탁·대행수거(9)	민간수거 (10)
종 이 팩(11)			(kg/년)		
유 리 병(12)					
금속캔(13)		철 캔			
		알루미늄캔			
합 성 수 지	단일재질	PET(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14)			
		PE(폴리에틸렌)·PP(폴리프로필렌)·PS(폴리스티렌) 등 기타 단일재질(15)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16)			
		EPS(발포폴리스티렌)(17) PSP(폴리스티렌페이퍼)(18)			
	복합재질	상기 단일재질이 복합적으로 사용(19)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20)				

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단위: 톤, kg/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21)		지자체 분리수거량(8)		
종 류	세 부 품 목	계	지자체 직접수거 또는 민간위탁·대행수거(9)	민간수거 (10)
전 지 류 (22)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kg/년)		
전자제품 (23)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가정용)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자동판매기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키보드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포함)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아르 및 디브이디)			
	이동전화기단말기(전지, 충전기 포함)			
형 광 등(24) (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포함)		(개/년)		

다.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단위: 톤, ㎘/년)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지자체 분리수거량(8)		
종 류	세 부 품 목	계	지자체 직접수거 또는 민간위탁·대행수거(9)	민간수거 (10)
소형가전제품 (25)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톤/년)		

[작성요령]

1. 일반현황

(1): 지자체명 기재(서울시 강서구, 광주시 광산구 등)
(2):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처리 담당부서 기재
(3):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처리 담당자 기재
(4): 수거처리 담당자와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5): 수거처리 담당자의 e-mail 기재
(6): 지자체 주소 기재

2. 분리수거량(년간 기준)

공통사항 - 각 품목별 자치단체(시·군·구)별 전년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한량 기재 - 단위는 반드시 톤/년 단위로 작성(단, 윤활유는 ㎘/년으로, 형광등은 개/년 으로 작성) - 해당사항(분리수거 실적)이 있는 품목만 기재(실적이 없으면 공란으로 처리)

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분리수거량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포장재
(8): 지자체에서 직접 분리수거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토록 하여 분리수거한 량과 민간 수거업체에서 분리수거한 량
(9): 지자체에서 직접 분리수거한 량 또한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토록하여 분리수거한 량
(10): 지자체에서 발생한 재활용가능자원중 민간업체에서 분리수거한 량(9호의 분리수거한 량 외의 분리수거한 량)
(11): 종이팩 분리수거량 기재(우유팩 등)(단위는 ㎏/연간을 사용)
⇒ 책, 박스 등의 종이류는 제외
(12): 유리병 분리수거량 기재 ⇒ 도자기, 식기류 등은 제외
(13): 금속캔을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량 기재
(14): PET(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분리수거량 기재
(15): "(14)~(17)"이외의 단일재질로 된 합성수지 분리수거량 기재(PE,PP,PS 등)
(16):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 분리수거량 기재

(17): EPS(발포폴리스티렌) 일명 “스티로폴”의 분리수거량 기재
(18): PSP(폴리스티렌페이퍼) 일명 “스티로폴”의 분리수거량 기재
(19): 복합재질의 합성수지 분리수거량 기재(PE+PP, PVC+PET 등)

※ 뚜껑이나 라벨 등이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로 된 경우는 복합재질이 아니며, (20)에 해당되는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는 제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간단하게 분리 가능한 것은 단일재질로 간주함)
(20):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과자·라면 봉지류 등)

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4호에서 제7호에 해당되는 제품
(22): 전지를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량으로 분리수거량 기재
(단위는 ㎏/연간을 사용)
(23): 전자제품을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량 기재
(24): 형광등 분리수거량 기재(단위는 개/연간을 사용)
(25): 소형가전제품의 분리수거량을 기재하되, 폐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련 법률에 의거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

04

2017. 3. 6.

CONTENTS

Ⅰ. 지침 개요 ············ 127

1. 목적 ············ 127
2. 관련 법령 ············ 127
3. 이용대상 ············ 127
4. 적용범위 ············ 127

Ⅱ. 재난폐기물 처리체계 ············ 128

1. 재난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 128
2. 재난폐기물의 정의 ············ 128
3. 재난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 ············ 128
4. 재난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 129
5. 재난 발생시 대응 ············ 138
6. 주민 홍보 ············ 141

Ⅲ. 재난유형별 폐기물 처리 ············ 142

1. 수해폐기물 ············ 142
2. 지진폐기물 ············ 145
3. 화학사고 폐기물 ············ 149

Ⅳ. 행정사항 ············ 151

1. 재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임시조치 ············ 151
2. 재난폐기물 발생 및 처리 보고 ············ 151
3. 재해복구비 국고지원 ············ 152
4. 기 타 ············ 152

부록 ············ 153

Ⅰ. 지침 개요

1 목적

○ 수해 등 재난 발생시 발생하는 재난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폐기물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지진재해대책법

3 이용대상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재난폐기물 담당자, 재난폐기물 처리업자 등

4 적용범위

○ 본 지침의 '재난폐기물' 정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 부합하는 폐기물을 처리 하는 경우

○ 폐기물 발생량이 자치단체의 통상적인 처리량 보다 많게 발생하거나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침을 내용을 반영하여 처리

Ⅱ. 재난폐기물 처리체계

1 재난의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의미함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2 재난폐기물의 정의

○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3 재난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

○ 재난폐기물은 주민 안전 및 위생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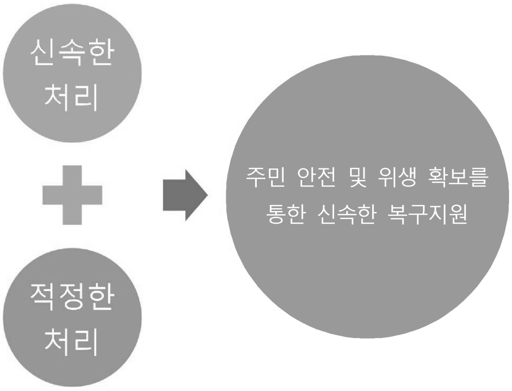

4 재난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1) 대응 체계 구축

○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할구역의 재난쓰레기 처리 조직체계를 **지역 재난안전대책 본부와 연계하여 정비**

○ 재난폐기물은 단기간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치단체의 조직·인력·장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인근 자치단체·군부대 또는 민간 간**에 신속한 **협력체계 구축**

-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적 처리체계 구축, 피해정보 수집체계 정비, 중앙행정기관과의 연락체계 정비, 기초자치단체간 협조체계 구축 유도 등을 추진

※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의 2차 임시적환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 활용, 수집·운반차량 확보 등 협조체계 사전협의 및 조정(연말 또는 연초 등 재난발생 대비 광역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

- **기초자치단체**는 인근 기초자치단체 또는 군부대 등의 인력·장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관련 민간단체 또는 지부 등을 통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 구축

※ 재활용 선별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인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처리 협조 요청

재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협조가능 단체			
1	한국생활폐기물협회	5	한국건설폐기물공제조합
2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6	대한건설기계협회
3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7	대한건설협회
4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기타

〈 재난폐기물 수거 및 처리 관련 지원 요청사항 〉

□ 인근 자치단체 및 군부대

○ 대형쓰레기 등의 적재 및 적하 장비, 수집운반차량, 작업인력, 대형쓰레기의 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 임시 적환장의 설치부지, 임시적환장에서 필요한 장비

○ 폐기물 처리시설의 재난폐기물 우선처리 협조 등

□ 민간단체 등

○ 장비임대업체, 건설기계협회 등 : 대형쓰레기 등의 수집운반 장비(적재와 적하 장비 포함), 임시적환장에서 필요한 장비, 정지작업용 중기, 작업인력

○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등 : 대형쓰레기 수집운반 차량, 수집운반 인력, 임시 적환장에서 필요한 장비와 인력, 임시 적환장의 긴급 중간처리시설(파쇄, 소각)

○ 토지소유자와 관리자 : 임시 적환장 설치부지, 진입도로 부지 등

2) 재난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 처리 계획 수립 절차

발생량 예측		수집·운반 계획 수립		임시적환장 확보 및 운영계획 수립		최종 처리 계획
재난별 발생량 예측	➔	배출 및 수집 방법, 운반경로 등	➔	적환장 부지 확보·설치 및 운영 등	➔	재활용·소각·매립 등

○ 발생량 예측

- 별도의 발생량 예측 방법이 부재한 경우에는 유사한 **피해지역의 폐기물 종류별 원단위, 밀도(단위부피당 무게), 폐기물 발생면적** 등을 참고하여 발생량을 예측
- 최근 10년간의 재난폐기물 발생량, 피해예상도, 기상관측 자료 등의 자료를 활용

○ 수집·운반 계획 수립

- 신속한 배출 및 임시 적환장 용량 등을 고려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방법에 맞추어 **분리배출 방법을 간소화** 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배출도 임시적으로** 허용
- 위험물(가스통, 유류, 화학물질 등)은 별도 분리배출하여 수집운반시 폭발 및 화재사고를 예방
- 과거 재난 사례 및 피해예상도를 고려하여 수집·운반경로는 **복수로 마련**하고 **임시적환장 후보지와 연계**하여 검토

※ 재난폐기물 처리를 위해 미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임시등록을 실시하여 원활한 수집운반이 되도록 조치

-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가용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수집·운반에 투입하여 신속한 수집운반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복구 시 수집·운반경로의 확보가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소방서, 경찰서 등에 통보하여 우선지원 및 협조 확보**
- 폐기물 처리업체 및 청소용역 업체 등과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체제 유지

○ 임시적환장 확보·운영 계획 수립

- 임시적환장은 1차 임시적환장, 2차 임시적환장으로 나누어 확보

※ 1차 임시적환장 : 집 앞이나 도로변에 배출된 재난폐기물의 빠른 수거를 위해 피해지역 인근에 설치한 보관장소로 운영기간은 수일에서 일주일

※ 2차 임시적환장 : 중간처리 및 자원화가 가능한 재난폐기물의 보관을 위한 임시보관 장소로 1차 임시적환장보다 장기간 운영하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및 소각처리를 위한 선별 등 전처리 작업을 수행

- 앞서 예상한 재난폐기물 발생량을 바탕으로 필요한 적환장의 수를 산출하고, 재활용 선별시설이나 매립시설, 사용하지 않는 공터 등 사전에 파악하여 이용가능한 장소를 임시적환장으로 확보

※ 후보지 선정시 환경 영향, 보관규모, 중장비 및 선별작업 편리성과 교통 접근성 을 고려한 최적 수송거리 확보 등을 검토

〈 임시적환장 산출(예시) 〉

□ OO시 OO구 임시적환장

○ 1차 임시적환장 : OO백화점 공터
(면적 : 1,200㎡, 보관가능량 : 343톤)

○ 2차 임시적환장 : OO시 OO구 재활용 선별시설
(면적 : 2,904㎡, 보관가능량 : 830톤)

- 임시적환장 운영시 안전사고,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출입문과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변과 격리시키고 입·출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출입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유도

- 유기물의 부패, 발효에 따른 악취·해충 발생 방지를 위해 **소독 및 탈취를 매일 2~3회 실시**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소독 및 탈취제 사용시 작업자에게 취급 주의사항을 숙지시킬 것

- 임시적환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를 위해 차수시트나 아스팔트를 포설하고, 임시포장, 배수구, 배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며, 침출수는 공공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 업체 등에 위탁처리

-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임시적환장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야간작업이 최소화되도록 작업계획 수립

※ 2차 임시적환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활용 등 사전협의 및 협조

〈2차 임시적환장 선정 검토 기준(안) 〉

구 분	세 부 내 용
부지선정	○ 소음 , 교통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지역 등과 연계 ○ 국가 또는 지방단체 소유 공유지 등 우선검토
환경영향	○ 악취, 먼지, 침출수 발생 등에 따른 하천, 습지, 지표수, 지하수, 토양, 식물 등의 환경영향 최소화 지역 ○ 침식방지, 화재예방, 비산먼지 발생 등을 고려하여 선정
교통 및 접근성	○ 재해 지역, 임시적환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연계하여 GIS 기반 최적 수송거리 교통체계 검토
보관규모	○ 충분한 용량 확보 및 보관장 적재 높이 고려
보 안	○ 필요시 울타리, 카메라 설치 등 사고예방 대책 마련
시설설계	○ 바닥포장, 차수막(방수포 등) 등 시설설치, 물·전기 공급 등을 고려하여 설계

·

〈 2차 임시적환장 필요면적〉

□ OO시 OO구 광역처리(예시)

○ 재난폐기물 발생량 : 1,462톤, 필요 면적 5,117㎡

* 필요 면적 : 재난폐기물 1톤당 3.5m2에 해당

○ 2차 임시적환장 기존면적 : 2,904㎡

○ 추가 필요 면적: 2,213㎡

*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처리를 위한 임시적환장 확보

OO시 OO구 재난 폐기물량 발생량 및 필요면적	
면 적	5,117㎡/톤
보 관 가능량	1,462톤
비 중	3.5㎡/톤

⇨

OO시 OO구 임시적환장 :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
2,904㎡
830톤
3.4988㎡/톤

⇨

추가 면적(2,213㎡)
① OO시 △△구 재활용 선별시설
면적 : 330㎡ 보관가능량 : 94톤
② OO시 ◇◇구 재활용 선별시설
면적 : 2,754㎡ 보관가능량 : 787톤

〈 임시적환장의 설치 및 운영〉

□ 1차 임시적환장

○ 개수 : 피해가옥 360호 당 1개소, 또는 피해면적 8만㎡당 1개소

○ 면적 : 피해가옥 1호 당 6㎡

※ 1차 임시적환장 이용 장소 : 공원, 운동장, 시민회관, 폐기물처리시설, 지자체 소유의 다른 시설의 부지, 지자체 소유의 공터, 민간 소유의 공터나 개발예정지, 국유지 공터, 피해지역의 폐기물 배출장소, 농협의 과일선별시설 등을 대상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 신속처리 및 생활불편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차 임시적환장

○ 면적 : 재난폐기물 1톤당 3.5㎡

※ 2차 임시적환장 이용 장소 : 공원, 운동장, 시민회관, 폐기물처리시설, 지자체 소유의 다른 시설의 부지, 지자체 소유의 공터, 민간 소유의 공터나 개발 예정지, 국유지 공터 등

□ 가연성 폐기물 임시적환장 보관시 화재예방대책

○ 적재 높이 5m이하, 폐기물더미 적재면적 200㎡이하, 폐기물더미간 간격 2m이상

○ 목재 칩의 적재높이 4m이하, 적재 최대 폭 8m, 전체 부피 1,000㎥이하

□ 임시적환장은 침출되는 침출수, 유류, 유해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아스팔트를 포설하거나 차수시트를 깔고 그 위에 토사를 덮어서 차수시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단, 매립지 위에 보관하여 그러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 차수시트(고밀도 PE필름 등) 등을 포설한 임시적환장의 폐기물 적재부지는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이 잘 빠지도록 경사도를 2%이상으로 하고, 침출수의 집수설비를 갖추어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단, 매립지 위에 보관하여 그러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 비산방지를 위한 방진망 설치 및 주기적 살수방안 검토

□ 석면 등 유해폐기물 등은 종류를 표시하여 일정장소에 보관

〈 임시적환장 등의 소독 및 악취방지〉

□ 사용약품의 종류

○ 소독 및 탈취제는 유제(乳劑), 유제(油劑), 분말형, 입자형 등이 있으며 수해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일정분의 약품을 비축하고, 인근 지자체에 재해발생 시 약품에 대한 상호 지원 체계를 마련

□ 약품의 살포방법

○ 살포시 약품의 분무입자나 가루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 착용

○ 피부와 접촉시 비눗물로 세척

○ 살포는 바람을 등지고 할 것

○ 플라스틱 제품에 뿌리면 변색되거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유의할 것

○ 실내 살포시 애완동물은 사전에 옥외로 이동시킬 것

○ 피부, 음식물, 식기, 장난감, 사료 등에는 살포하지 말 것

○ 화염을 향하여 분무하지 말 것

○ 살포 기구는 사용 후에 세척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할 것

□ 취급 시 주의사항

○ 희석액 제조시 식품용기 사용금지

○ 식품, 식기, 사료 등과 구별하여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냉암소에 보관하고 수성 유제(乳劑)는 극저온의 장소에 보관 금지

○ 사용 후에 남은 약품은 반드시 밀봉하여 보관장소에 보관

○ 약품에 따라서 「소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취급에 유의할 것

○ 재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재난폐기물은 가능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선별하여 매립량을 줄이고 지자체마다 폐기물 성상별 최종 처리시설 지정

※ 중간 및 최종처분 장소 선정 등 폐기물 처분장소 사전협의

- 악취, 침출수 발생의 우려가 높은 유기성폐기물 및 해안에서 유입된 해초 등이 포함된 혼합물 등은 조기에 신속히 처리

-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은 품목에 따라 구분, 밀봉하여 명시 후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
- 목재 및 가전제품류는 소각 또는 재활용 하기 전에 수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2차 임시적환장에 보관하여 가능한 한 물기 및 오물 제거
- 재난폐기물의 매립으로 인한 악취, 해충과 침출수 발생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마련

※ 주변 주민의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책 마련

- 산사태로 건물, 도로 등으로 유입되는 토사는 재해복구 및 성토재로 사용하고, 폐기물과 혼합된 토사는 폐기물과 분리하되 분리가 곤란한 경우 매립처리
- 오니는 폴리에틸렌포대 등에 담아 매립 처리

〈재난폐기물 처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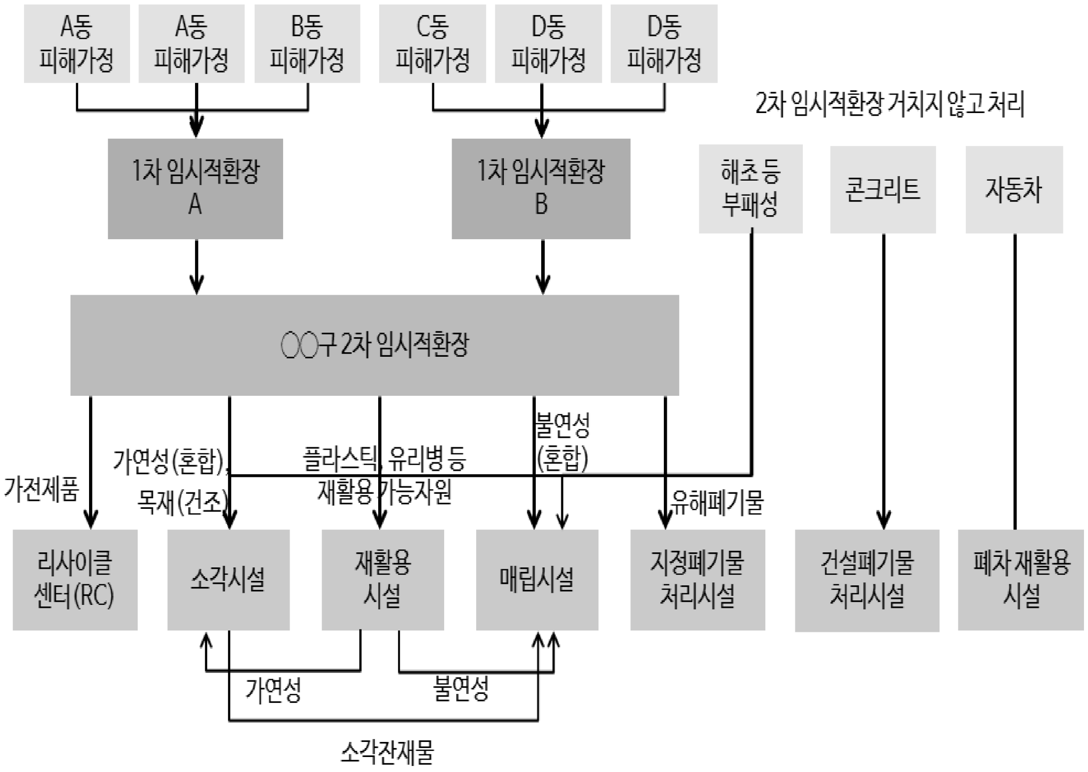

〈재난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 종 류	처리방안	처리 및 처분시설
목 재	○ 목재는 최대한 건조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본류 및 임목쓰레기는 퇴비, 우드칩, 톱밥 등은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 건조시킨 목재는 보일러 연료, 발전 등에 활용 ○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은 소각	재활용시설 소각시설
금 속	○ 이물질을 제거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철과 비철금속을 구분. ○ 재활용 할 수 없는 경우 매립 처리	재활용시설 매립시설
대 형 (가구)	○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가연성 잔재물은 소각 처리	소각시설, 파쇄시설 재활용시설
가전제품	○ 폐가전제품은 2차 임시적환장(선별시설)에서 각 지역의 리사이클링센터로 인계하는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단순 해체, 분리, 파쇄, 선별 등을 통해 금속 또는 비금속을 회수 ○ 냉장고, 에어컨 등 프레온 가스(CFC)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가연성 잔재물은 소각처리	리사이클 센터
플라스틱 유리병 등 포장재류	○ 폐포장재류는 2차 임시적환장(선별시설)에서 지역의 재활용 선별시설로 인계하여 재활용하도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협조체계 구축	재활용시설
가연성 (혼합)	○ 가연성폐기물은 가능한 소각처리하고 지역 및 현장여건상 소각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매립처분	소각시설
불연성 (혼합)	○ 불연성폐기물은 2차 임시적환장 등에서 파쇄, 선별 등을 통하여 자원 (금속)회수 후 잔재물은 매립처리 ○ 위험물(폭발물, 유해물질 등)은 필요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매립시설
자동차	○ 2차 임시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배출원 혹은 1차 임시적환장(집결지)에서 바로 폐차 재활용업체에 인계 ○ 폐차업자는 냉매(HFC, CFC 등) 및 재사용·재활용 부품, 액상폐기물 등을 회수한 뒤 해체작업 실시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처리	폐 차 재활용시설
유 해 폐기물	○ 살충제, 농약, 페인트류, 수은함유 폐기물, 금속실린더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물품 종류별로 구분하여 밀봉하고 유해성을 표기하여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자 등에 위탁처리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콘크리트	○ 2차 임시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5 재난 발생시 대응

1) 재난 관련 정보 수집 및 협조 요청

○ 일반정보 수집

- 재해 발생 일시, 장소, 피해 지역 개요, 기상상황

※ 재해정보는 행정안전부 재난위기종합상황실의 국가재난위기통합관리시스템 (http://www.dcms.go.kr 또는 htt:;//10.1.55.151/ITSN)에서 수집하고 그밖에도 언론보도, 주민제보, SNS 등을 참고하여 침수 발생현황 등의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재난폐기물 처리 관련 정보 수집

- 생활폐기물 인프라 관련 정보 파악 (가용자원 도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인력·차량, 폐기물 처리시설 인력·차량·시설 등의 피해여부 및 정도

- 주요 피해상황 (완파·반파된 가옥 수, 피해 면적 등 발생량 반영)
- 주요 도로 피해상황 (폐기물 수집·운반 경로 반영)
- 자원봉사자, 타 지자체 등의 지원인력 대기시설, 숙소 등의 확보 상황
-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및 규모
- 환경부 및 피해 시·도(시·군·구)의 상황실 보고 및 근무 체계파악

○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사전 협의한 단체 등에 협조 요청

〈지원요청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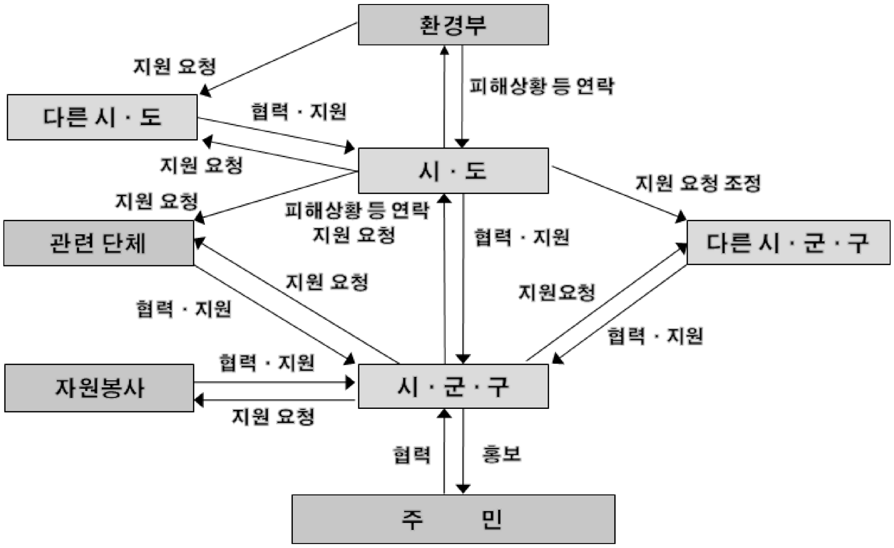

2) 재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사전에 수립한 재난폐기물 예측발생량,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시행**

○ 재난폐기물 수집·운반

- 공중위생 및 신속한 복구 차원에서 피해지역에 재난이 발생한 직후 바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조치
-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수집·운반
- 재난폐기물 수집·운반 우선지역(수집·운반도로 등)을 지정하여 복구 작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최대한 분리배출 하도록 주민 홍보

- 위험물의 혼입과 작업인력의 피로, 부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노동시간 설정 및 관리 등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현장에서 행정업무 담당자, 전문가, 처리업자, 자원봉사자 등이 동시에 작업을 하므로 작업의 효율과 안전 확보에 특히 유의

- 수거 완료 후 주택, 농경지 등에 대한 일제 대청소 실시

○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 재난폐기물의 성상별 처리를 위한 선별 등의 작업을 용이하기 위한 방향으로 배치도 설계
- 분리수거 방법 (금속류, 대형 가구류, 목재류, 가전제품류, 포장재류, 혼합(가연성/불연성), 유해폐기물 등) 에 따라 보관장소를 선정하여 **분리보관**하고 반출순서를 정하여 반출하되 매립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반출
- 반출 전, 파쇄·선별 등 전처리가 필요한 것은 이동식 파쇄기 및 선별기 등을 확보하여 전처리 실시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선별 등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자원화 시설로 반출

〈 2차 임시적환장 폐기물 종류별 배치도(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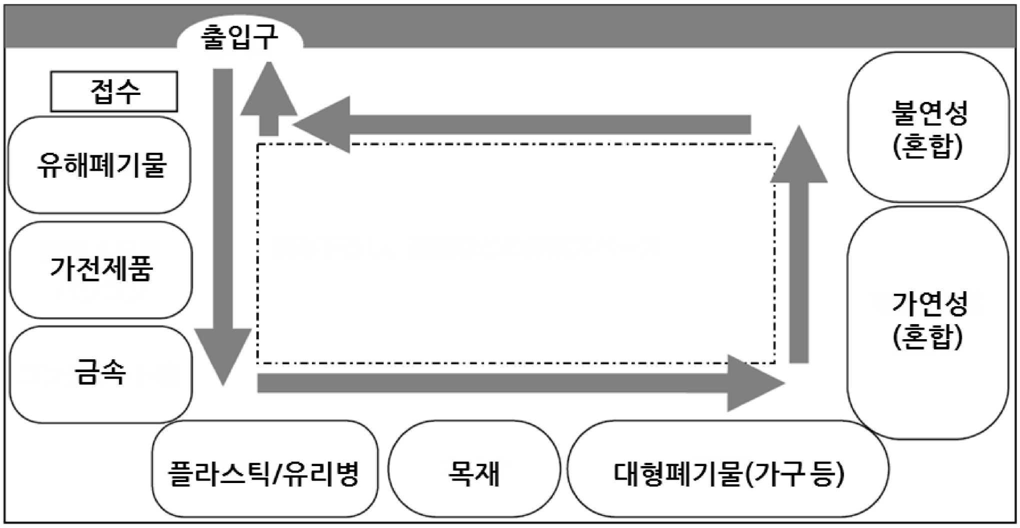

6 주민 홍보

○ 복구시 주민이 준수하여야 하는 배출방법 등의 정보를 언론, 안내방송, 안내판과 홈페이지 게재,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통해 제공

○ 주요전달내용

- 분리배출방법, 배출장소 등
- 배출시간대 및 기간
- 임시적환장 위치 및 운영 상황 (직접 반입가능 시간·절차 등)
- 자원봉사자 지원의뢰 방법, 안내 창구의 위치 및 연락처
- 위험물 등 배출시 주의사항 등

Ⅲ. 재난유형별 폐기물 처리

1 수해폐기물

1) 수해폐기물의 정의

○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한 침수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이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하천 상류에서 떠내려와 댐·호소·하구역, 하천변, 도로, 침수지역 등에 퇴적된 쓰레기를 의미

※ 댐·호소·하구역, 하천변 등에서 수거한 부유쓰레기는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지침 등(환경부 수생태보전과)에 따름

2) 수해폐기물 처리 업무 수행 체계

○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의 임무 및 기능

구 분	임 무 / 기 능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	○ 수해폐기물 발생시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원 ○ 수해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및 조정 ○ 수해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집계 및 보고 ○ 환경부 재난상황 발령시 단계별 상황근무 및 종합상황실 설치시 상황근무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환경부 폐자원 에너지과	○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에 반입되는 수해폐기물의 적정 처리 감독 ○ 환경부 재난상황 발령시 단계별 상황근무 및 종합상황실 설치시 상황근무

구 분	임 무 / 기 능
환경부 수생태 보전과	○ 부유쓰레기 발생시 수거처리를 위한 조치 ○ 환경부 재난상황 발령시 종합상황실 설치 및 단계별 상황근무 ○ 부유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상황에 대한 취합 및 보고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정비
시·도 청소담당 부서	○ 관할구역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계획 마련 ○ 관할구역 내 1·2차 임시적환장, 폐기물처리시설, 장비 등 가용자원 파악 ○ 관할구역 내 시군구간의 상호협력 체제 구축 및 조정 ○ 인근 시·도와 협력체제 구축 ○ 유관 중앙행정기관과 연락체제 구축
시·군·구 청소담당 부서	○ 재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관내 가용자원 파악 ○ 임시적환장 가동 여부 파악, 임시적환장 운영 및 홍보 ○ 인근 시·군·구, 지역소재 군부대, 폐기물관련 공공기관, 지역소재 군부대 및 민간업체 등의 지원가능 장비의 보유실태 파악과 협력체제 구축 ○ 시·도와의 연락체제 구축 ○ 수해폐기물 처리 현황 관리(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운반 및 처리비용 등)
유역(지방)환경청	○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침수방지대책 강구 및 피해상황 파악

3) 수해폐기물 발생량 예측

○ 침수예상도, 최근 10년간 수해폐기물 발생량, 가옥 수 등을 고려하여 발생량을 예측하되 자료가 부족한 경우 다음에 기초하여 산정

※ 침수가옥 한채당 1.7톤

○ 성상별 사후 발생량 산정

- 2차 임시적환장(선별시설) 확보 및 적환장 출입구에 계량시설을 설치하여 수해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및 처리량 도출

4) 수해폐기물 발생시 단계별 대응 및 조치사항

단계별	주요 대응 및 조치할 사항
집중호우·태풍 예보, 수해 발생단계	◇ 수해폐기물 발생억제 조치 ◇ 수해폐기물 상황실 설치 및 정보의 수집 ◇ 폐기물 처리시설, 수집운반차량의 피해예방 조치 ◇ 수해피해 상황의 보고체계 정비
⇩	
수해폐기물 배출단계	◇ 분리배출 및 배출장소 등에 대한 홍보 ◇ 수해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대응 완료 시까지 주기적으로 실시) ◇ 수해폐기물 발생량 산정 ◇ 임시적환장 선정 부지 지정 및 부대시설 설치 ◇ 수집운반 및 처리장비, 인력 지원 협의 ◇ 폐기물처리시설, 수집운반시설 등의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조치 시행 ◇ 폐기물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	
수해폐기물 수거단계	◇ 임시적환장 운영 ◇ 유관기관 인력 및 장비 투입 ◇ 수해폐기물 임시적환장 반입 및 선별 실시 ◇ 침출수 등의 처리
⇩	
수해폐기물 처리단계	◇ 수해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운반 및 처리 - 자체 및 인근 지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 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재활용과 안전을 고려한 처리 실시
⇩	
수해복구 마무리단계	◇ 수해지역 일제 대청소 실시 ◇ 수해폐기물 처리종료 및 평시 처리체계로 전환 ◇ 수해폐기물 처리비용 국고지원 신청 및 정산

2 지진폐기물

1) 지진폐기물의 정의

○ 지진(해일 포함)으로 파괴된 건물, 도로, 교량 등의 철거에 의해 발생한 건축물과 사회기반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일시적으로 대량 발생된 생활폐기물, 폐슬레이트 등 석면함유폐기물, 유류, 유해화학물질 등 같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구 분	임 무 / 기 능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지진폐기물 발생시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원 ○ 지진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및 조정 ○ 환경부 재난상황발령시 단계별 상황근무 및 종합상황실 운영 ○ 지진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집계 및 보고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피해방지 대책과 피해복구 조치 ○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에 반입되는 지진폐기물의 적정 처리 감독 ○ 환경부 재난상황발령시 단계별 상황근무 및 종합상황실 설치시 상황근무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피해 및 조치상황 보고·전파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피해방지 대책과 피해복구 지원 ○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피해 및 조치상황 취합 및 보고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환경부 화학안전과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안전처리를 위한 조치 ○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의 피해복구 지원 ○ 환경부 재난상황발령시 단계별 상황근무 및 종합상황실 설치시 상황근무 ○ 유해화학물질의 피해 상황과 조치사항에 대한 취합 및 보고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정비

구 분	임 무 / 기 능
시·도 청소담당 부서	○ 관할구역 내 시군구간의 상호협력 체제 구축 및 조정 ○ 인근 시도와의 협력체제 구축 ○ 유관 중앙행정기관과 연락체제 구축 ○ 사업장일반(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내진 대책 요청 ○ 피해현황 파악 및 보고
시·군·구 청소담당 부서	○ 상급기관인 시·도와의 연락체제 구축 ○ 인근 시·군·구, 지역소재 군부대, 폐기물관련 공공기관, 지역소재 군부대 및 민간업체 등의 지원가능장비의 보유실태 파악과 협력체제 구축 ○ 사업장일반(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내진 대책 요청 ○ 피해현황 파악 및 보고
유역(지방)환경청	○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피해상황파악 및 지정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감독 및 지원

3) 지진폐기물 발생량 예측

○ 지역특성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토지이용 (건물밀도 등을 포함), 발생량 원단위, 용적에서 중량을 산정하는 환산계수, 건물 등의 구조별 (RC조, 목조 등) 설치상황 등을 파악하여 예측

4) 지진폐기물 발생시 단계별 대응 및 조치사항

단계별	주요 대응 및 조치할 사항
지진 발생전	◇ 대응조직 사전편성 ◇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수집·운반·처리계획 수립 ◇ 임시적환장 지정·운영계획 수립
⇩	
지진폐기물 배출단계	◇ 분리배출 및 배출장소 등에 대한 홍보 ◇ 지진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대응 완료 시까지 주기적으로 실시) ◇ 지진폐기물 발생량 산정 ◇ 임시적환장 선정 부지 지정 및 부대시설 설치 ◇ 수집운반 및 처리장비, 인력 지원 협의 ◇ 폐기물처리시설, 수집운반시설 등의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조치 시행 ◇ 폐기물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	
지진폐기물 수거단계	◇ 임시적환장 운영 ◇ 유관기관 인력 및 장비 투입 ◇ 지진폐기물 임시적환장 반입 및 선별 실시 ◇ 침출수 등의 처리
⇩	
지진폐기물 처리단계	◇ 지진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운반 및 처리 - 자체 및 인근 지자체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재활용과 안전을 고려한 처리 실시
⇩	
지진복구 마무리단계	◇ 피해지역 일제 대청소 실시 ◇ 지진폐기물 처리종료 및 평시 처리체계로 전환 ◇ 지진폐기물 처리비용 국고지원 신청 및 정산

5) 지진폐기물 처리 시 참고사항

〈 건축물 해체 폐기물, 유해폐기물 등 처리 〉

□ 건축물 해체폐기물의 처리, 처분계획 시 고려사항

○ 전파, 반파 등 해체가 필요한 건축물 수와 발생량 예측

○ 건축물 해체폐기물의 임시적환장 확보 및 분산배치

○ 해체 우선순위(2차 재해가능성이 높은 건축물, 통행지장 등) 선정

○ 해체현장에서의 분리배출 및 임시적환장에서의 파쇄·선별 체계 수립

○ 대형 콘크리트는 파쇄 후 재생골재로 활용

○ 폐목재는 대체 에너지원으로 활용

○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분진, 석면 등 비산방지, 소음진동대책 수립

○ 건축물 해체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으로부터 낙하물 방지대책 수립

○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 유해폐기물의 처리, 처분 대책

○ 석면함유폐기물은 해체, 보관, 운송, 처분 시 비산방지대책 수립

○ 유해물질의 누출 등에 의해 지진폐기물에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하고, 보관 및 관리에 철저한 대책 마련

3 화학사고 폐기물

1) 화학사고 폐기물의 정의

① **(잔류 화학물질)** 누출된 당해 화학물질로, 소화수와 섞여 흘러나오거나 소석회 등으로 중화처리된 폐기물도 포함

* 공정 내(파이프, 저장·보관시설 등)에 잔류한 화학물질 경우, 사업주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

② **(화학물질 오염폐기물)** 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한 재난으로 발생하고 당해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오염(반응)된 각종 폐기물

2) 화학물질 오염폐기물 처리업무 수행 체계

○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임무 및 기능

구 분	임 무 / 기 능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화학물질 오염폐기물 발생시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원 ○ 화학물질 오염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및 조정 ○ 환경부 재난상황발령시 단계별 상황근무 및 종합상황실 근무 ○ 화학물질 오염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보고·전파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에 반입되는 화학물질 오염폐기물의 적정 처리 감독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환경부 화학안전과	○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안전처리를 위한 조치 ○ 환경부 재난상황발령시 단계별 상황근무 및 종합상황실 설치시 상황근무 ○ 유해화학물질의 피해 상황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전파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정비
시·도 청소담당 부서	○ 관할구역 내 시군구간의 상호협력 체제 구축 및 조정 ○ 인근 시도와의 협력체제 구축 ○ 유관 중앙행정기관과 연락체제 구축
시·군·구 청소담당 부서	○ 상급기관인 시·도와의 연락체제 구축 ○ 인근 시·군·구, 지역소재 군부대, 폐기물관련 공공기관, 지역소재 군부대 및 민간업체 등의 지원가능장비의 보유실태 파악과 협력체제 구축
유역(지방)환경청	○ 지정폐기물의 발생현황파악 및 지정폐기물 처리

3) 화학물질 오염폐기물 발생량 예측

○ 오염폐기물(농작물, 초목류 등)의 분포면적과 단위면적당 오염물질의 원단위를 기준으로 추정하되 부피와 중량을 산정

4) 화학물질 오염폐기물의 처리

① 잔류 화학물질

- 소화수와 함께 흘러나오는 잔류 화학물질은 폐수처리장 또는 임시 저류장(공장자체 또는 공단공동)에 집수하여 임시 보관했다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이송·처리

* 폐수처리장 및 임시저류장이 없는 경우 폐수운반차량에 모아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이송

- 소석회 등으로 중화처리된 화학사고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이송·처리

② 화학물질 오염폐기물

- 화학물질 오염폐기물은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

* 지정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구분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오염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

- 지정폐기물은 1·2차 임시적환장에 별도의 장소를 할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
- 지정폐기물 보관 시 오염폐기물로부터 오염물질이 용출되지 않도록 차수시트(고밀도 PE필름 등)로 덮거나 바닥에 내구성 차수시트를 깔고 토사로 덮거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을 포설하여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가능한 효율적 운반 및 처리를 위해 적당크기로 해체하여 가연성 및 불연성을 구분하여 보관
- 화학물질에 오염된 가축의 사체는 로타리킬른식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고 이동식 소각시설을 이용할 경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소각

* 매립할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별도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50cm 이상 복토하여야 함

③ 공통

- 화학사고 폐기물 취급(제거·수집·운반·처리) 과정에서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보호구(분진마스크, 장갑, 작업복 등) 지급·착용 등 적절한 조치 시행

Ⅳ. 행정사항

1 재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임시조치

○ 재난폐기물을 용량 초과, 복구공사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매립, 소각, 재활용 등)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장일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과 협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에 가장 적합한 회원사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등이 부족할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임시차량으로 등록하여 사용

○ 이재민 임시 숙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임시조치

- 통상의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분리배출 및 수거를 실시하되, 종량제 시행을 유예하거나 무상으로 종량제 봉투 지급

2 재난폐기물 발생 및 처리 보고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지방자치단체) 신고 및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후 회원가입 및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배출시 올바로 시스템에 배출정보 입력

○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전일 재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일 10:00까지 환경부 상황실로 보고

- 전화 (044)201-7368, 팩스 (044)201-7376

○ 시·군·구는 관할 재난폐기물의 수집·처리가 완료된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 환경부(폐자원관리과)에 제출보고

3 재해복구비 국고지원

○ 폐기물처리시설의 피해복구비, 재난폐기물의 처리비가 국고보조의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도를 경유, 환경부에 신청

○ 국고지원 관련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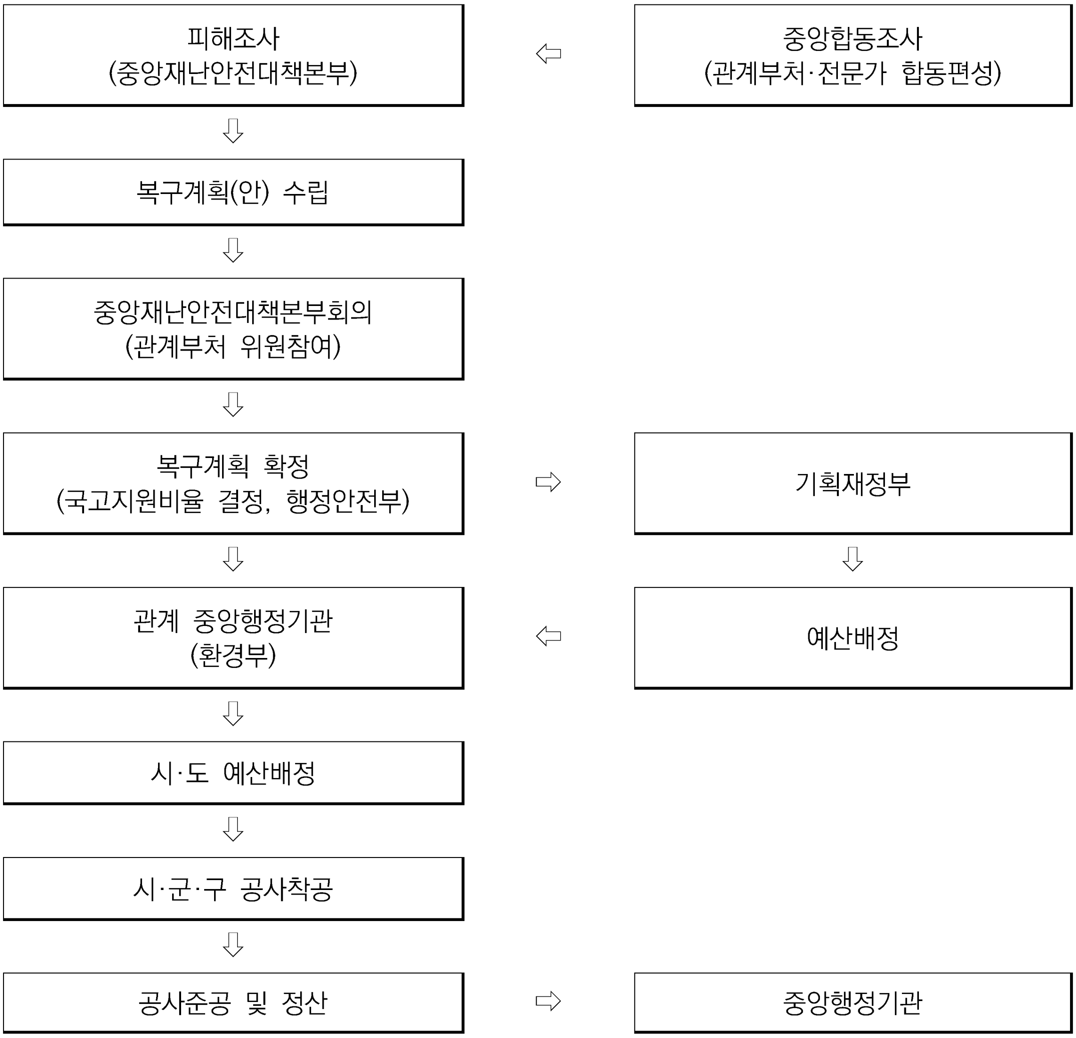

4 기 타

○ 종전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13.11, 환경부)는 폐지함

부 록

1. 환경분야 재해대책 유관기관
2. 재난폐기물 장비 및 인력지원 협조요청 기관·단체
3. RC(리사이클 센터)
4. 수도권 매립지 반입시 행정사항
5. 각종 양식

1. 환경분야 재해대책 유관기관

환경분야 재해대책 유관기관 현황

구 분	연 락 처	
	전 화	F A X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o 사회재난대응과	02)2100-0733	02)2100-5458
환 경 부		
o 수도정책과	044)201-6490	044)201-7130
o 생활하수과	044)201-7147	044)201-7150
o 자연자원과	044)201-7246	044)201-7261
o 화학물질과	044)201-6838	044)201-6830
o 폐자원관리과	044)201-7368	044)201-7376
o 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044)201-7394
o 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2	044)201-7412
o 유역(지방)환경청		
-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031)790-2475	031)790-2479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33)760-6462~6	033)765-0129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55)211-1611~19	055)211-1604
-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230-6431~3	053)761-0128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42)865-0730~7	042)863-0128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62)410-5211~4	062)605-5219
-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70-1831~8	063)270-1839
한국환경공단		
o 영농폐기물선진화 추진실	032)590-4290~5	032)590-4299
국립공원관리공단		
o 재난관리팀	02)3279-2821~4	02)3279-283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o 매립관리처	032)560-9420~32	032)560-9457

2. 재난폐기물 장비 및 인력지원 협조요청 기관·단체

수해쓰레기 장비 및 인력지원 협조요청 기관·단체 현황

구 분	기관 · 단체명	전 화 번 호	주요 요청장비
공공기관	한국환경공단	032-590-4290~5	- 집게차량
	- 수도권지역본부	031-590-0645	- 운반차량
	- 강원지사	033-742-5117	
	- 충북출장소	043-219-6420~2	
	- 충청지역본부	041-860-7701~2	
	- 전북지사	063-530-0801~5	
	- 호남지역본부	061-322-7309	
	- 경북지사	053-580-7517	
	- 영남지역본부	055-320-0310~3	
	- 제주출장소	064-722-6542	
민간단체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02-3661-3181~3	수집·운반 차량
	㈔한국생활폐기물협회	02-734-2766	“
	㈔전국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031-8042-7300	“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031-221-5611	집게차, 운반차량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02-2689-9059~60	상동
	대한건설협회	1588-6912	상동
	대한건설기계협회	02-501-5701	상동

3. RC(리사이클 센터)

RC(리사이클 센터) 현황

RC명	소재지	관할 지역	취급품목	처리량 (ton/yr)	연락처
MRC	경기 용인	수도권 남부 강원도 일부	전기·전자제품 (TV, 모니터 제외)	21,000	031-323-5740
KRC	경기 양주	수도권 북부 강원도 일부	전기·전자제품	19,000	031-837-1862
ARC	충남 아산	충청권	전기·전자제품 (TV, 모니터 제외)	22,000	041-531-8811
YRC	경북 영천	경북권	전기·전자제품	18,000	054-331-9061
CRC	경남 함안	경남권	전기·전자제품 (TV, 모니터 제외)	20,000	055-586-0420
HRC	전남 장성	호남권	전기·전자제품	20,000	061-393-0873
JRC	제주	제주권	전기·전자제품	2,000	064-782-5665

4. 수도권 매립지 반입시 행정사항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위한 행정사항

1. 반입차량
   - 시·군·구별 등록된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으로 반입
   - 일반 덤프차량 이용시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으로 등록 후 반입

   ※ 매립지 현장 여건상 8톤 이상만 등록가능

2. 반입일시 : 각 자치단체별로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협의 요청

3. 반입차량표시 : 차량전면에 재난쓰레기 운반차량임을 표시(재난의 종류를 기입 ex: 수해, 지진 등)하는 스티커를 부착·반입(A4)

OO쓰레기 수송차량 ○○○ 시·군·구(직인)

4. 반입방법 : 구체적인 반입방법은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통보

5.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청서 작성(수도권매립지공사 구비)

   ※ 단, 수도권매립지 미반입 시·군은 도청을 통해 등록함

5. 각종 양식

재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일일 보고(. .)

1. 재난발생 일반현황

시·도	피해 면적(㎢)	피해 가구수	이재민수	비 고
합 계				
○○시·군·구				

2. 폐기물 발생량

가. 수해로 인한 재난

(단위 : 톤)

시·군·구	폐기물 발생현황							
	총발생량		침수 폐기물				하천 부유폐기물 (하천, 댐, 호소, 하구역)	
			가 옥		도로, 농경지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합계								

나. 그 밖의 재난 (재난의 특성에 따라 변동가능)

(단위 : 톤)

시·군·구	폐기물 발생현황							
	총발생량		종류별				유해 폐기물 *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합계								

* 1) 유해폐기물(폐유, 화학물질, 농약류 등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은 별도 기록

3. 폐기물 처리량

(단위 : 톤)

시·군·구	총 발생 예상량		처리량		임시적환장 보관량		미수거 예상량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합계								

4. 폐기물 처리비용

가. 위탁 수집운반 비용

시·도	시·군·구	수집운반량 (톤)	수집운반 단가 (원)	수집운반비용 (천원)			
				합계	국 고	지방비	기타
합계							

나. 위탁 처리 비용

1) 재활용 비용

시·도	시·군·구	처리량 (톤)	처리단가 (원)	처리비용 (천원)			
				합계	국 고	지방비	기타
합계							

2) 소각처리 비용

시·도	시·군·구	처리량 (톤)	처리단가 (원)	처리비용 (천원)			
				합계	국 고	지방비	기타
합계							

다. 매립처리 비용

(단위 : 톤, 천원)

시·군·구	반입비 지원대상(수도권매립지등)					자체처리 대상		
	처리량 (A)	톤당 처리단가(B)	처리비용			처리계획량 (C)	처리량	
			국고	지방비	기타		금일	누계
합 계								
시·군·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5. 자치단체 장비·인력투입 현황

시·군·구	장비 투입(대)								참여인원 (명)	
	계		청소차		집게차		중장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합계										

6. 외부지원 장비·인력투입 현황

시·군·구	장비투입(대)								참여인원 (명)	
	계		청소차		집게차		중장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합계										

7. 임시적환장 설치 및 관리현황

가. 1차 임시적환장

시·군·구	소재지 (개설 및 폐쇄일자)	면적 (천㎡)	근무인원 (명)	운용 장비수 (대)	위생관리(약품소독) 내용
합계					

나. 2차 임시적환장

시·군·구	소재지 (개설 및 폐쇄일자)	면적 (천㎡)	근무인원 (명)	운용 장비수 (대)	위생관리(약품소독) 내용
합계					

다. 2차 임시적환장 내 폐기물 반입·반출현황

1) 총괄현황

○○구 A 적환장	반입량		처리량(반출량)		보관량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금일	누계
합계						

2) 세부현황

성상별 처리량	금속	목재	재활용 (플라스틱, 유리병 등)	가전제품	대형(가구)	유해	기타 혼합물	
							가연성	불연성
톤								
처리시설 명 (수선별, 파쇄, 기계선별등)								

8. 기타 특기사항

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피해 및 복구현황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수집운반차량, 차고지 등의 피해 및 복구상황 등 기재

○ 관할 지역내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의 피해 및 복구상황 등 기재

※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은 대부분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역(지방)환경청, 이나 업체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여 취합 보고

나. 기타 향후 재난폐기물 처리를 위한 제언 등

○ 재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애로점 및 위기 극복사례 등 타 지자체에 전파하여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사항 기재

※ 최종보고는 일일보고 양식을 기반으로 재난별 발생현황 양식에 맞추어 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05

환경부고시 제2016-108호(2016. 6. 7.)

환경부고시 제2016-108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른「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53호, 201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 원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산정방법) 용역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근거로 별지서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노무비

가. 노무비의 구성

1) 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요소를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된다.

2) 노무비는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직접노무비 산정

1) 직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 제수당 및 퇴직급여 충당금은「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가) 기본급

기본급은 원가계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예시〉 기본급 산정 방법

-일 급: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시 급: 일급 ÷ 8시간
-월 급: 일급 × 월 근무일수
-연 봉: 월급 × 12개월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나) 제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특수작업수당(위험수당), 운전수당을 적용한다.

-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한다.
- 도로 및 야외에서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작업수당(위험수당) 월 90,000원을 적용한다.
- 청소 차량 운전자에 한하여 운전수당 월 200,000원을 적용한다.

다) 상여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에 의해 기본급의 연 400%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퇴직급여 충당금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직접노무비는 작업인원, 작업시간, 수집·운반량 등을 기준으로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공 식〉

직접노무비 = 노무량 X 노무비 단가

다. 간접노무비

1)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간접노무비는 미화원과 운전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방향을 선도하는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차량 수리수선을 담당하는 차량정비공, 선별근무자, 세차원, 무단투기 등 기동민원처리반, 압축기 관리원, 경비원 등의 노무비에 해당되며, 현장직원이 아닌 본사의 사장이나, 총무, 경리 등과 같이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함. 단 대행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부 작업원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로 분류할 수 있음

〈공 식〉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간접노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의 공사원가계산 중 그 밖의 보완적 반영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공사종류는 ‘그 밖의 공사’ 적용).

※ 다만, 직접계산법을 통해 산출한 비율이 본 고시가 제시한 비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직접계산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

〈예 시〉

-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인원을 적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경우 인원 부풀리기 등의 편법이 동원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과대계상 등의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예규를 준용하여 산출
- 공사원가계산의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에 따른 간접노무비율(%) 산출표는 아래의 표와 같음. 공사종류 그 밖의 공사,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공사기간 12개월 이상을 적용하여 산정한 간접노무비율은 15.3%(15%, 14%, 17%의 평균)로 적용됨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 그 밖의 공사(전문, 전기, 통신 등)	14.5 15 15.5 15
공사규모별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4 15 16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 15 17

2. 경비

가. 경비의 정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소요된 용역원가 중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는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당해 용역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에 따라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감가상각비

가) 감가상각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 차량 등 유형고정자산에 한하며, 자가용 등 수집·운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상은 제외한다. 또한 시·군·구 소유 차량이나, 구입 시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부분(구입가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한다.

나)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구입일,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각각 개별 산정한다.

※ 내용연수 기준시점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며, 현행법상 정액법에서는 잔존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및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반영하지 않는다.

라) 감가상각비 산정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원가산정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한다.

〈예 시〉

- 원가산정 시점이 2013년 10월일 경우,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아닌, 2013년 10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하도록 함
- 차량 구입일이 2007년 12월일 경우, 원가산정 시점이 2013년 10월이므로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총 2개월에 대한 차량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반영함

※ 단, 기존 대행기관과의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는 감가상각비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차량 밀폐화를 위한 대수리·수선비는 감가상각비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감가상각비에 포함되는 대수리·수선비는 2016년까지 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수리수선비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차량의 수리수선비로서 검사비와 수리비를 포함하며, 당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수선비는 제외한다.

나) 개별 차량의 수리비를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과대계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준품셈의 유사기종(덤프트럭) 차량유지관리비 중 정비비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표준품셈에서 차량유지관리비는 상각비계수, 정비비계수, 관리비계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각비는 개별 산정하며, 관리비계수는 실제 관리비용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대계상 방지를 위해 상각비계수 및 관리비계수는 반영하지 않음

다) 표준품셈에 의해 산정된 수리비에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차량 구입연수(사용연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한다.

※ 실제 신차의 경우 수리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차량 사용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리비도 증가함.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수리비를 100% 인정할 경우 과대계상의 우려가 있음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가중치	50%	60%	70%	80%	90%	100%

〈예 시〉

- 원가산정 시점이 2013년일 경우, 차량 구입일이 2013년(구입 1년차)인 5톤 차량 수리비 산정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함

구분	정비비계수	차량가격	시간당비용	1일 운행시간	수리비		가중치	수리비
			계수*가격*(10^{-7})		1일	연간		
5톤	1,067	40,000,000	4.268	7.13	30,430	9,524,590	50%	4,762,295

※ 단, 기존 대행기관과의 계약 갱신이 아닌 신규 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정가격 작성 시에는 수리수선비 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차량의 검사수수료는 업체 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공 식〉

- 수리수선비 = 수선비 + 검사수수료
- 수리비 = 정비비계수 X 차량가격 X 10^{-7} X 일 운행시간 X 연간 운행일수 X 가중치
- 검사수수료 = 해당 차량의 실제 검사수수료

3) 인적보험료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을 대상으로 법령에 정해진 요율에 의해 산정한다.

※ 차량관련 물적보험은 세금과공과에 포함시켜 산정함

4) 복리후생비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의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피복비, 급식비 등을 말한다.

나) 피복비는 춘추복, 하복, 작업화 연 2회, 동복, 방한모, 방한화, 우의, 안전모, 장화, 안전조끼 연 1회, 작업용장갑 월 15회, 마스크, 수건 월 2회 이상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가는 실거래가격 및 최근 물가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급식비는 수집·운반 작업일 당 1식 제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가는 7,000원을 적용한다.

라) 기타 항목은 의료위생약품비, 파상풍 및 독감 등 특수건강예방접종비 등으로 산정하며, 단가는 최근 물가자료 및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

5) 유류비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의 주행 중 발생하는 연료소비량에 대한 것으로서, 현장실사를 통해 측정한 운행시간과 표준품셈의 기계경비부문 운반장비(덤프트럭) 시간당 유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나) 표준품셈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직선보간법에 의해 시간당 유류소모량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 연료 단가는 원가산정 기준 시점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 고시단가를 적용한다.

〈공 식〉

- 연간 유류비 = 일평균 운행시간 X 시간당 연료 소모량 X 연료 단가 X 연간 운행일수

6) 세금과공과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과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세금 및 공과금을 말한다.

나) 개별 차량에 대한 업체 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일괄 계약에 의해 통합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차량별 평균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7) 기타 경비

가) 기타 개별 산정이 어려운 여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전력비, 소모·사무용품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나) 기타 경비는 원가계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원가통계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사종류는 산업환경설비공사 분야, 공사기간은 6개월 초과~12개월 이하, 공사규모는 전년도 연간 대행계약 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시〉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통계 경비율(2014년도)

구 분 / 비 목	배 부 율			계	평 균
	공사종류 (산업환경 설비)	공사규모 (5~30억)	공사기간 (7~12개월)		
전력비	0.179%	0.147%	0.138%	0.464%	0.155%
수도광열비	0.767%	0.148%	0.136%	1.051%	0.350%
복리후생비	3.432%	1.705%	1.498%	6.635%	개별계산
소모·사무용품비	0.845%	1.750%	1.675%	4.270%	1.423%
여비·교통비·통신비	1.059%	0.390%	0.329%	1.778%	0.593%
세금과공과	0.425%	0.282%	0.291%	0.998%	개별계산
도서인쇄비	0.167%	0.052%	0.035%	0.254%	0.085%
지급수수료	17.770%	2.391%	2.064%	22.225%	7.408%
계					10.014%

다) 단,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의 회계장부를 통해서 기타 경비 항목에 대한 비용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산정하여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위한 관리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관리 비율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5. 기타 유의사항

이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과 복리후생비는 현재보다 낮게 결정되지 않도록 함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행용역계약을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본 고시를 적용한다.

별지 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서

○ 용역 명 :

○ 용역 기간 :

구 분 /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용역 원가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유류비			
		세금과공과			
		여비·교통비·통신비			
		기타 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기타 비용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명( )

성명 (서명 또는 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06

환경부고시 제2017-217호(2017. 11. 29.)

환경부고시 제2017-21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1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37호, 2016.12.1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1. 덮개 재질 및 형태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이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한다.

나. 덮개의 형태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2. 덮개 구조의 기준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적재함옆면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재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보조틀로 사용할 수 없음)

나.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상·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34조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기인증 또는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인증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활용품 수집·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을 덤핑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덤핑 기능은 경·소형 및 중형 수집·운반차량에 한하여 허용한다.

〈적재물별 비중〉

적재물품	비 중	적재물품	비 중
재활용품	0.100	대형폐기물	0.240
재활용품(압축형 차량)	0.300		

나. 적재함에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다.

1) 전면: 전면 판넬 중간 부위

2) 측면: 적재함 좌·우 측면 앞쪽 하단부

〈측면 설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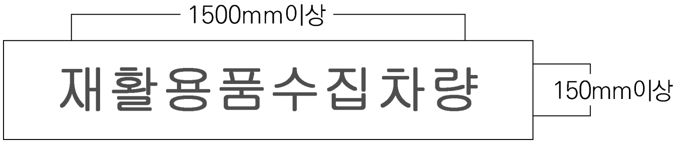

※ 글자체(굴림체), 개별 글자 크기(가로·세로 각각 150㎜이상), 개별 글자 간격(60㎜이상), 단어 간격(90㎜이상), 전체글자크기(가로×세로 : 1500㎜×150㎜이상), 노란색 또는 호박색 글씨로 표시. 다만, 최대적재량이 2.5톤 이하인 경우는 상기 기준 3분의2로 조정 가능

4.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51호, 2016.02.29〉

부칙〈제2016-237, 2016.12.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217, 2017.11.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07

환경부고시 제2015-164호(2015. 9. 31.)

환경부고시 제2015-164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3일

환경부장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대상기관"이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평가대상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말까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단독·공동),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2. 종량제 시행계획, 시행방식 및 전환계획
3. 재활용 방법, 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 수집·운반체계 개선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계획
5. 그 밖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 계획 등

③법 제14조의3제1항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는 평가대상기관의 재정적,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평가대상기관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 ①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3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4월 31일까지 성과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기능) 평가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①평가위원회는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대상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운영)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관은 구성 위원 과반수이상이 성과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대한 의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 수당 등)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서 등 제출)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제5조에 따른 성과보고서 및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결과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활용) ①평가대상기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성과평가결과를 확인·검증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확인·검증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지원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성과평가결과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관에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출한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기준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수립 기준

(제4조제3항 관련)

1. 목표수립 항목

○ 평가대상기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연간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가.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

나.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

다.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목표

2. 목표수립 기준년도

○ 감량목표는 목표수립 시작년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2015년 목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평균자료를 기준으로 수립한다.

3. 목표수립 기준 및 방법

○ 연간 목표를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의 감량목표 최소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항 목	매해 감량목표 최소기준	기준년도
전체 발생량 (톤/년)	가정 1인당 발생량의 최소목표값과 동일한 기준을 설정	2015년도는 2011년부터 2013년 3년간 평균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가정 1인당 발생량 (kg/인·년)	- 45.0 kg/인·년 미만 ; 매년 0.3% - 45.0~90 kg/인·년 미만 ; 매년 0.5% - 90 kg/인·년 이상 ; 매년 0.7%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kg/사업장수·년)	매년 0.5%	

※ 가정 1인당 발생량은 가정 및 소형음식점 포함

※ 가정 1인당 발생량 최소감량목표는 매년 0.5%이상 설정하되, 상위 20%는 0.3%, 하위 20%는 0.7% 이상을 설정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목표

○ 감량목표 작성양식은 전체 발생량, 가정 1인당 발생량,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에 대하여 기준년도와 향후 5년간의 발생량 목표를 기재

○ 감량률은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감량목표 최소기준에 적합하게 수립

○ 최초 기준년도는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평균 발생량을 기준으로 함

항 목	구 분		기준년도	Y+1	Y+2	Y+3	Y+4	Y+5
전체 발생량	가정	발생(예상)량 (톤/년)						
		감량률(%)	/					
	다량배출 사업장	발생(예상)량 (톤/년)						
		감량률(%)	/					
	합계	발생(예상)량 (톤/년)						
		감량률(%)	/					
가정 1인당 발생량	가정 1인당 발생(예상)량 (kg/인·년)							
	감량률(%)		/					
다량배출사업장 당 발생량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예상)량 (kg/사업장수·년)							
	감량률(%)		/					

※ 발생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감량률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1.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 (15)	1-1. 발생량 산정계획의 적정성	2
	1-2. 발생예상량 및 감량목표 계획수립의 적정성	4
	1-3. 수거 및 처리 계획의 적정성	3
	1-4.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의 적정성	6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35)	2-1. 발생량 산정의 적합성	7
	2-2.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0
	2-3.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0
	2-4.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8
3.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40)	3-1.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실적	17
	3-2. 다량배출사업장의 맞춤형 추진대책	9
	3-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3
	3-4. 홍보 및 교육	6
	3-5. 종량제 민원대응 및 개선	3
	3-6.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재·개정	2
4.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10)	4-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의 적정성	3
	4-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의 적정성	4
	4-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의 적절성	3

□ 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및 방법

1.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15점)

1-1. 발생량 산정계획의 적정성(2점)

평 가 항 목	배점(2)	배점기준
가정 및 소형음식점 발생량 산정계획	1	○ 산정계획 적정(1점), 보통(0.7), 미흡(0.5점)
다량배출사업장 발생량 산정계획	1	○ 산정계획 적정(1점), 보통(0.7), 미흡(0.5점)

- 가정 및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산정방법을 계획에 포함하고, 그 산정방법은 별첨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발생예상량 및 감량목표 계획 수립의 적정성(4점)

평 가 항 목	배점(4)	배점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예상량 산정	1	○ 적정(1.0점), 보통(0.7점), 미흡(0.5점)
전체 발생량 감량목표	1	○ 적정(1.0점), 보통(0.7점), 미흡(0.5점)
가정 1인당 발생량 감량목표	1	○ 적정(1.0점), 보통(0.7점), 미흡(0.5점)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 감량목표	1	○ 적정(1점), 보통(0.7), 미흡(0.5점)

- 발생 예상량은 여건변화 전망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감량목표는 연도별로 각 항목별 감량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1-3.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계획의 적정성(3점)

평 가 항 목	배점(3)	배점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계획	1	○ 적정(1.0점), 보통(0.7점), 미흡(0.5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계획	2	○ 적정(2.0점), 보통(1.5점), 미흡(1.0점)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계획에는 가정 및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발생량 관리를 위한 수거계획을 포함한다.
- 적정처리 계획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또는 위탁처리 계획과 처리시설 및 처리방법을 포함한다.

1-4.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의 적정성(6점)

평 가 항 목	배점(6)	배 점 기 준
종량제 시행계획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수수료 현실화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홍보 및 교육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종량제 민원대응 및 개선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재·개정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계획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특·광역시도의 지원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35점)

2-1. 발생량 산정의 적합성(7점)

평 가 항 목	배점(7)	배 점 기 준
발생량 산정기준 적정 여부	2	○ 적합 (2.0점), 일부부적합(1.0점), 부적합(0점)
전체 발생량 산출결과	2	○ 적합 (2.0점), 일부부적합(1.0점), 부적합(0점)
가정 1인당 발생량 산출결과	2	○ 적합 (2.0점), 일부부적합(1.0점), 부적합(0점)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 산출결과	1	○ 적합 (1.0점), 일부부적합(0.7점), 부적합(0.5점)

- 발생량 산출결과는 별표1의 발생량 산정기준에 적합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산출결과가 정확하여야 한다.
- 가정 1인당 발생량은 가정 및 소형음식점의 발생량을 포함한다.

2-2.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적(10점)

평 가 항 목	배점(10)	배 점 기 준
감량 목표 달성	4	○ 달성 : (4점), 미달성 : (2점)
최소목표치 달성	3	○ 최소목표 달성(3점), 최소목표치의 80% 이상(2.5점), 60% 이상(2.0점), 40% 이상(1.5점), 40% 미만(1점)
초과 달성	3	○ 최소목표 기준 0.3%이상 초과달성(3점), 0.2%이상(2점), 0.1%이상(1점)

2-3.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10점)

평 가 항 목	배점(10)	배 점 기 준
감량 목표 달성	4	○ 달성 : (4점), 미달성 : (2점)
최소목표치 달성	3	○ 최소목표 달성(3점), 최소목표치의 80% 이상(2.5점), 60% 이상(2.0점), 40% 이상(1.5점), 40% 미만(1점)
초과 달성	3	○ 최소목표 기준 0.3%이상 초과달성(3점), 0.2%이상(2점), 0.1%이상(1점)

- 가정 1인당 발생량은 가정 및 소형음식점의 발생량을 포함한다.

2-4.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8점)

평 가 항 목	배점(8)	배 점 기 준
감량 목표 달성	3	○ 달성 : (3점), 미달성 : (1.5점)
최소목표치 달성	3	○ 최소목표 달성(3점), 최소목표치의 80% 이상(2.5점), 60% 이상(2.0점), 40% 이상(1.5점), 40% 미만(1점)
초과 달성	2	○ 최소목표 기준 0.3%이상 초과달성(2점), 0.2%이상(1.5점), 0.1%이상(1점)

3.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40점)

3-1.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실적(17점)

평 가 항 목	배점(17)	배점기준
종량제 시행률	9	○ 공동주택 시행세대 ÷ 공동주택 총세대 × 4점 ○ 단독주택 시행세대 ÷ 단독주택 총세대 × 3점 ○ 소형음식점 시행세대 ÷ 소형음식점 총세대 × 2점
종량제 적용방법	3	○ 세대별 적용 세대 ÷ 총세대 × 3점 ○ 단지별 적용 세대 ÷ 총세대 × 2점
	3	○ 무게적용 세대 ÷ 총세대 × 3점 ○ 용기적용 세대 ÷ 총세대 × 2점 ○ 봉투적용 세대 ÷ 총세대 × 1점
계획 대비 추진실적	2	○ 적정(2.0), 보통(1.5), 미흡(1.0)

3-2. 다량배출사업장의 맞춤형 추진대책(9점)

평 가 항 목	배점(9)	배점기준
맞춤형 대책 분야	5	○ 발생원별 대책분야 × 1점 : 최대 5점
다량배출사업장의 맞춤형대책 참여비율	2	○ 참여 (다량)사업장수/총 다량배출사업장수 × 2점
계획 대비 추진실적	2	○ 적정(2.0), 보통(1.5), 미흡(1.0)

- 대상 : 음식점, 농수산물 유통센터, 대형마트, 공공기관, 학교, 군부대, 호텔, 병원, 휴게소, 예식장 등
- 맞춤형 대책 분야(예시) : 음식점(소형찬기 도입), 공공기관(시차조리), 대형마트(산지포장) 등
- 다량배출 사업장의 맞춤형대책 참여비율 : 관내 전체 다량배출 사업장 중 맞춤형 대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비율

3-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3점)

평 가 항 목	배점(3)	배점기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주민부담율	2	○ 종량제 수수료 수입합계 ÷ 수집·운반·처리 등 비용합계 ÷ 적용율 × 2점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적절(1), 미흡(0.5)

- 적용율
  - ‘15년 : 특·광역시 관내 구청 0.6, 일반시 0.5, 군지역 0.4
  - ‘16년 : 특·광역시 관내 구청 0.7, 일반시 0.6, 군지역 0.5
  - ‘17년 : 특·광역시 관내 구청 0.8, 일반시 0.7, 군지역 0.6
  - ‘18년 : 특·광역시 관내 구청 및 일반시 0.8, 군지역 0.7, ‘19년 이후 : 전체 0.8

※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12.11) 참조

3-4. 홍보 및 교육(6점)

평 가 항 목	배점(6)	배점기준
홍보·교육	3	○ 추진실적×0.5점 : 최대 3점
홍보추진의 적정성	2	○ 탁월(2), 우수(1.5), 보통(1.0), 미흡(0.5)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 홍보·교육 실적
  - 광고 : TV(공중파, 종편, 케이블 포함), 라디오, 신문, 잡지, 영화관, 지하철, 버스 등 광고 게재 실적
  - 보도자료 제공 : 언론에 기사화된 보도자료 제공 실적
  - 홍보물 제작 : 포스터, 리플렛, 책자, 전단지, 스티커, 기념품, 현수막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 실적
  - 온라인·뉴미디어 : 지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홍보 실적

· 교육(캠페인·설명회) : 주민 교육, 이벤트, 설명회, 간담회, 캠페인 등 실적
- 광역시도의 지원 실적 포함

3-5. 종량제 민원대응 및 개선사례(3점)

평 가 항 목	배점(3)	배점기준
민원대응	1	○ 대응민원 수/총민원 수
민원대응의 적정성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개선사례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 민원대응 : 배출 및 수거 등 종량제 시행에 따른 민원대응 노력과 민원 대응의 적정성
- 개선사례 : 발생량 감소, 종량제시행 관련 주민의견수렴, 사전불편사항 개선 등 발생량 감소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3-6.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제·개정(2점)

평 가 항 목	배점(2)	배점기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 반영 여부	1	○ 반영(1.0), 일부반영(0.7), 미반영(0.5)
발생량 산정을 위한 관리방안 반영여부	1	○ 반영(1.0), 일부반영(0.7), 미반영(0.5)

- 지자체 조례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및 성과평가 기준 등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과 발생원별 발생량 산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10점)

4-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의 적정성(3점)

평 가 항 목	배점(3)	배 점 기 준
발생원별 관리를 위한 수집운반 체계	2	○ 적정(2), 보통(1.5), 미흡(1)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 가정 및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발생량 관리 및 발생 억제 계획 수립을 위해 별도 수거용기 및 수거방법, 계근방법 등에 대한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4-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의 적정성(4점)

평 가 항 목	배점(4)	배 점 기 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3	○ 전량 재활용(3), 일부 재활용(2), 매립 또는 기타(1)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 적정(1), 보통(0.7), 미흡(0.5)

-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시설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의 적절성(3점)

평 가 항 목	배점(3)	배 점 기 준
재활용제품 판매	3	○ 최종재 및 중간재 유상판매(3점), 최종재 및 중간재 무상공급(2점), 최종재 및 중간재 유상공급(비용지불)(1점)

- 지자체 공공시설과 민간 위탁처리시설 모두 해당한다.

별 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및 방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산정 범위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가정 및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산정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 단위

- 발생량 단위는 중량단위로 나타내며, "kg" 또는 "톤"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피 단위는 중량환산계수를 곱하여 중량 단위로 변환하여 표시한다.

※ 중량(kg) = 부피(리터) × 중량환산계수(0.75)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법의 인정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배출 당시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시 인정 방법
생활폐기물	- RFID 기기에 부착된 계측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 운반차량에 부착된 계측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계량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	- 운반차량에 부착된 계측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계량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 사업장에서 지자체에 제출한 실적보고 자료

※ 다량배출사업장폐기물은 통계의 정확도를 위해 가급적 계측장치에 의한 데이터 활용 권장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가정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구분하고 가급적 발생원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소형 음식점	집단 급식소	대형 음식점	대규모 점포	농수산 시장	관광숙박 시설	기타

※ 기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6호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업장

나.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가정과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해당연도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과 인구수는 환경부 통계자료(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를 근거로 한다.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kg/인·년) = 연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kg/년) ÷ 관리지역의 인구(명)

다.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배출사업장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kg/사업장수·년)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kg/년) ÷ 다량배출사업장수(개소)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보고서(제5조제1항 관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개 요	• 목적 및 의의 • 법적 근거(조례 포함)
Ⅱ. 일반현황	• 행정구역, 인구, 주거형태, 관광객,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Ⅲ.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실적	
1. 발생량 산정방법	• 발생원별 발생량 산정방법
2. 전체 및 발생원별 발생량	• 주택(단독·공동),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억제 실적 • 월별 발생량 분석 • 계획 대비 실적 비교
3. 가정 1인당 발생량	
4.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	
Ⅳ.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실적	
1. 수집·운반 체계 및 개선실적	• 수거방식, 수거비용 등 • 발생원별 발생량 산정을 위한 수거체계 개선 실적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공공처리시설 및 민간위탁처리시설 현황 • 처리시설 확충 실적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	• 처리현황, 재활용 실적
4. 재활용제품 판매 및 공급실적	• 유상판매, 무상공급, 유상공급
Ⅴ.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실적	• 종량제 시행·시행방식 및 전환실적, 맞춤형 대책, 수수료 현실화, 홍보 및 교육, 종량제 민원대응, 조례 제·개정 등 • 사업별 예산 집행 실적 • 계획 대비 실적 비교
〈첨부〉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요약)	• 발생억제 5년 계획서에서 해당연도에 관한 계획을 원용하여 작성
1. 발생량 산정계획	
2. 발생예상량 및 감량목표	
3.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계획	
4. 적정처리 개선 계획	

별지 제2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결과서(제5조제2항 관련)

지자체명		추진기간	
평가일시		평가위원	(명)

평가 항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점
1. 발생억제 계획수립의 적정성	1-1. 발생량 산정계획의 적정성	가정 및 소형음식점 발생량 산정계획	1	
		다량배출사업장 발생량 산정계획	1	
	1-2. 발생예상량 및 감량목표 계획수립의 적정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예상량 산정	1	
		전체 발생량 감량목표	1	
		가정 1인당 발생량 감량목표	1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 감량목표	1	
	1-3. 수거 및 처리 계획의 적정성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계획	1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계획	2	
	1-4.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의 적정성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계획	1	
		다량배출사업장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1	
		수수료 현실화	1	
		홍보 및 교육	1	
		종량제 민원대응 및 개선	1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재·개정	1	
	소 계		15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실적	2-1. 발생량 산정의 적합성	발생량 산정기준 적정 여부	2	
		전체 발생량 산출결과	2	
		가정 1인당 발생량 산출결과	2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량 산출결과	1	
	2-2.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목표 달성	4	
		최소목표치 달성	3	
		초과 달성	3	
	2-3.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목표 달성	4	
		최소목표치 달성	3	
		초과 달성	3	
	2-4. 다량배출 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목표 달성	3	
		최소목표치 달성	3	
		초과 달성	2	
	소 계		35	

평가 항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점
3.기술적·재정적 지원성과	3-1.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실적	종량제 시행률	9	
		종량제 적용방법	6	
		계획 대비 추진실적	2	
	3-2. 다량배출 사업장의 맞춤형 추진대책	맞춤형 대책 분야	5	
		다량배출사업장의 맞춤형대책 참여비율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2	
	3-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주민부담율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3-4. 홍보 및 교육	홍보·교육 실적	3	
		홍보추진의 적정성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3-5. 종량제 민원대응 및 개선	민원대응	1	
		민원대응의 적정성	1	
		개선사례	1	
	3-6.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재·개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 반영 여부	1	
		발생량 산정을 위한 관리방안 반영여부	1	
	소 계		40	
4.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4-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의 적정성	발생원별 관리를 위한 수집운반 체계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4-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의 적정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3	
		계획 대비 추진실적	1	
	4-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의 적절성	재활용제품 판매	3	
	소 계		10	
총 점			100	

〈평가결과 주요내용〉

○ 성과평가 결과 문제점 또는 미흡한 점, 개선사항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08

환경부고시 제2012-200호(2015. 10. 7.)

환경부고시 제2012-200호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2015년 10월 7일
환경부장관

1. 산간·오지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 중 가구수가 100호 미만인 마을(면지역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나. 광역시 또는 시에 속한 면 지역 중「건축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을 제외한 마을로서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2. 도서 지역

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상의 전 도서

3.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부 칙 〈제2012-162호, 2012.8.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200호, 2015.10.7〉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09

환경부고시 제2014-38호(2014. 3. 19.)

환경부고시 제2014-38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9일
환경부 장관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집단급식소에서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의 1일 급식인원 항목의 총합으로 산정한다.

※ 예시 : 아침(30인), 점심(40인), 저녁(50인) 인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120명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3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10

환경부고시 제2014-66호(2014. 4. 22.)

환경부고시 제2014-66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2일

환경부 장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 제14조제6항 및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전산처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제5조의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3. “단위관리자”란 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수수료의 산정과 부과·징수 업무에 참여 또는 대행하게 하려는 자와 제8호의 현장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담당 또는 대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자를 말한다.
4.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식별정보”(이하 “배출자정보”라 한다)란 배출 과정 또는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배출자를 식별하고, 배출자별로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식별정보를 말한다.
5.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이하 “수수료단가”라 한다)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산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단가를 말한다.
6.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이란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무게 또는 부피 단위로 산정한 양을 말한다.
7.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의 “수수료 산정일”이란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배출량에 따라 시스템에서 수수료의 산정을 처리하기 위해 그 부과대상 기간의 만료일 이후 사용자가 정하는 처리일을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이하 “현장장비”라 한다)이란 사용자가 종량제의 운영을 위해 관할구역 내에 설치·운영하는 장비로서 무선주파수인식방법 등을 통한 배출자의 식별과 수수료 지불 가능 여부의 인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투입과 배출량의 산정, 수거·보관, 정보의 수집과 처리,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 등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9. “배출거점”이란 사용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에 현장장비, 전용수거용기, 거점수거용기, 공동보관시설 등을 설치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업장 등의 장소를 말한다.
10. “오류추정정보”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시스템에 입력 또는 처리되는 정보 중에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사용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출

기능을 제공하거나 시스템 게시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통보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려는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스템 주소) 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citywaste.or.kr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의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주소로 한다.

제5조(전산처리기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제6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와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정보의 입력과 확인 및 수정
   나. 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 및 산정 과정과 내역에 대한 확인
   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검출 기능을 제공하거나 통보한 오류추정정보의 확인
   라. 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에 적합한 현장장비의 설치, 정상적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마. 단위관리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승인과 관리·감독
   바. 배출자 및 단위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 기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한 사항
2.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승인
   나. 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정보의 확인·수정 및 통보
   다. 오류추정정보 검출 기능의 제공 및 통보

라. 시스템의 이용 또는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데 필요한 업무지원 및 점검
마.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바. 자료의 보존
사. 교육 및 홍보
아. 기타 시스템의 이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 내역을 기록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8조(단위관리자에 대한 사용승인) ①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단위관리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내역과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하여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관할구역 내 행정기구
2. 사용자가 수수료의 부과·징수·납부 등을 대행하도록 한 배출거점의 관리 및 운영주체 또는 대행자
3. 현장장비의 유지보수 업무 대행자
4. 기타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도로 사용승인을 요청한 단위관리자

②사용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허용범위 이외의 사용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도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위관리자
   가. 배출자정보, 수수료단가, 배출량, 수수료 산정내역, 현장장비 정보, 오류추정정보 등의 확인
   나. 배출자 변경에 따른 수수료의 중간정산 처리, 전자태그 또는 선·후불 카드 등 배출자의 식별수단과 수수료 지불수단의 재발급 처리
2 제1항 제3호에 따른 단위관리자
   가. 현장장비 정보의 확인
   나.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된 오류추정정보의 확인

③사용자는 단위관리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승인의 사유가 소멸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배출자정보의 입력) ①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배출자별로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배출자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1. 배출자관리번호, 배출자 형태, 배출자 식별자료 등 기초정보
2. 배출거점관리번호, 배출거점 형태, 배출거점 식별자료, 수수료 지불방식 등 거점정보
3. 전자태그 또는 선·후불 카드 등 배출자의 식별 및 수수료의 지불 수단 정보
4. 현장장비관리번호, 현장장비 식별자료, 수수료지불 방식 등 현장장비 정보
5. 기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정보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출자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 산정에 문제가 없도록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입력할 때 정보의 오기, 중복, 누락 등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식별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단가의 입력) ①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10일 전까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 수수료단가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수수료단가는 무게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입력하고, 부피단위의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피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수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입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배출량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하거나 배출량 구간 등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하는 수수료단가를 입력할 수 있다.

④사용자가 전자지불제도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산정·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단가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배출량의 입력) ①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3일 전까지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배출량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부과대상 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입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배출량을 입력할 때에는 배출자정보, 수수료정보, 배출일시 등 시간정보, 기타 수수료의 산정과 현장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가적 정보 등을 포함하여 입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매 수수료 산정처리 완료일까지 배출량을 입력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의 산정처리가 완료된 배출량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산처리 기구의 장에게 별도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시스템 또는 현장장비의 장애로 인한 경우
2. 배출자정보, 수수료단가, 배출량의 변경 또는 입력오류가 발생한 경우
3. 현장장비의 개선·변경·점검 및 보수로 인한 경우
4. 오류추정정보를 확인하여 오류가 확정된 경우
5. 배출자, 단위관리자로부터 배출량에 대한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수수료의 산정처리) ①사용자는 제2조제7호의 수수료 산정일에 부과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처리를 할 때에는 제11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인해 이전 수수료 산정 시에 처리가 되지 않은 배출량을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단위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의 산정처리를 할 수 있으며, 확인 과정에서 단위관리자로부터 재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검토하여 재산정 처리할 수 있다.

④수수료의 산정처리를 완료한 후에는 시스템에 생성된 수수료 산정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대체입력에 관한 사항) ①사용자는 천재지변, 시스템 또는 현장장비의 장애, 기타 사용자의 사유로 인해 제9조의 배출자정보, 제10조의 수수료단가, 제11조의 배출량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대체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체입력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검토한 후 사용자의 입력완료 요청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오류추정정보의 확인) 사용자는 배출자정보, 배출량, 수수료 산정자료, 현장장비 등과 관련한 오류추정정보를 확인하고, 수수료의 산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배출자 및 단위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업무) ①전산처리기구와 사용자의 소속직원은 시스템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위관리자가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알게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17조(시스템 이용규정) ①시스템을 이용한 수수료의 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시스템을 통해 게시한 사용자 매뉴얼을 따른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4-66호, 2014. 4.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자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사용신청 내역			
수수료방식	☐ 후불제	☐ 선불제	☐ 선·후불 병행
수수료적용	☐ Kg당 단가	☐ 부피당 단가	☐ 누진제
수수료단가	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수수료단가를 기재)		
적용구분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사업장
현장장비 유형	☐ 개별계량장비	☐ 차량수거장비	☐ 휴대형리더기
종량제 시행일	년 월 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시행일을 기재)		
사업개요	※ 공동주택수, 세대수, 사업예산, 단계별 확대 계획 등 일반개요 작성		
사업자명	주사업자		
	장비제조사		
통신서비스	※ 통신방식, 통신사 등 작성(향후 변경·추가되는 경우 별도 통보 필요)		
기타사항	※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시스템 사용승인 시 고려해야할 사항 등 작성		

상기와 같이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장 (직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사용승인서

승인번호	제○○○○-○○호

기초정보	기관명		유형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사용승인 내역	
지자체코드	
사용계정(ID)	
권한구분	□ 지자체 관리자 □ 단위관리자( )
조치 및 유의사항	
첨부자료	

년 월 일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내역에 대해 상기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대체입력 요청서

기초정보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대체입력 요청내역	
입력유형	☐ 배출자정보 ☐ 수수료단가 ☐ 배출량 ☐ 기 타
입력 요청사항	※ 대체입력을 요청하는 내역을 기재하고, 상세내역은 첨부자료 활용
요청사유 및 조치방안	※ 대체입력이 필요한 사유, 사유발생일, 해당 사유의 복구·해소방안 기재
입력완료 요청일	
첨부자료	
기타사항	※ 대체입력 시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참고사항 등 기재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에 상기와 같이 대체입력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 ○○○○○장 (직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